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 영 학 박 사 학 위 논 문

신기후체제의 무역규제와 국제무역협정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202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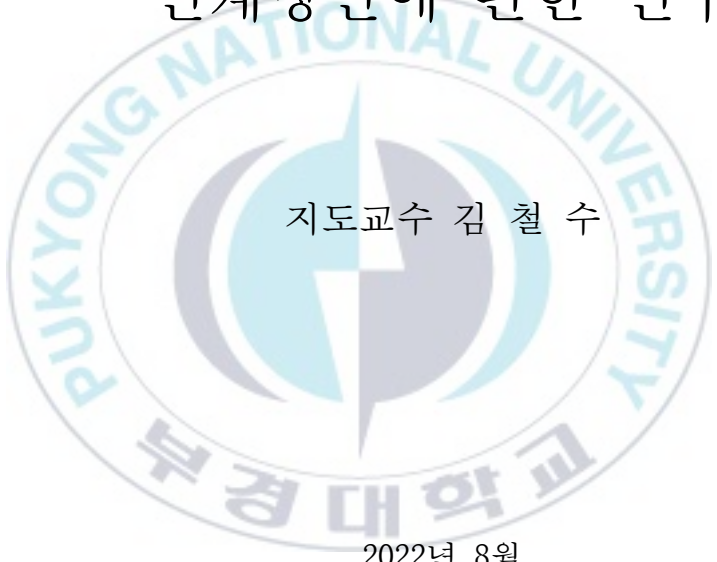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영 컨 설 팅 협 동 과 정

최 택 군

경 영 학 박 사 학 위 논 문

신기후체제의 무역규제와 국제무역협정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철 수

2022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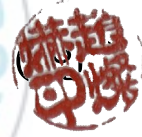
경 영 컨 설 팅 협 동 과 정

최 택 군

최택균의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26일

위원장 경영학박사 조 찬 혁



위원 경영학박사 최 순 권



위원 경제학박사 신 학 승



위원 경제학박사 김 동 윤



위원 경영학박사 김 철 수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6
제 2 장 기후협정과 무역장벽의 이론적 고찰.....	8
제 1 절 기후체제.....	8
제 2 절 국제무역시스템.....	11
제 3 절 무역장벽의 검토.....	17
1. 비관세장벽의 특징과 목적.....	19
2. 유형별 비관세장벽.....	22
3. 기술적 조치.....	30
제 3 장 신기후체제의 무역규제와 무역협정간의 비교검토.....	47
제 1 절 신기후체제의 무역규제 분석.....	47
제 2 절 신기후정책과 무역조항의 쟁점.....	51
1. GATT협정관련 쟁점.....	51
2. WTO 기타협정관련 쟁점.....	53
3. 지역무역협정관련 쟁점.....	60
4.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쟁점.....	61
제 3 절 기후협정과 무역조항의 역할 검토.....	65
제 4 장 기후협정과 무역협정의 상호작용 및 해결방안.....	79
제 1 절 무역협정의 변화를 통한 상호작용.....	79
1. WTO 협정의 변경을 통해 기후-무역 조치의 중복 해결.....	79
2. RTAs의 변화를 통해 기후-무역 조치의 중복 해결.....	84

제 2 절 기후협정의 변화를 통한 상호작용.....	86
1. 배출권 거래 및 탄소가격 책정.....	86
2. 에너지 보조금.....	87
3. 기술 이전 및 지적재산권.....	89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90
제 1 절 결론.....	90
제 2 절 시사점.....	93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94
참고문헌.....	96
국문요약.....	101
영문요약.....	103



표 차 례

<표 2-1> 무역장벽 유형 분류	19
<표 2-2> 비관세장벽 사례	20
<표 2-3> 전세계 신규 비관세장벽 추이(조사개시/통보건수)	22
<표 2-4> 반덤핑 조사개시 상위 10개국(최근 15년간)	24
<표 2-5> 반덤핑 피소 상위 10개국(최근 15년간)	25
<표 2-6> 상계관세 조사개시 국가(최근 15년간)	27
<표 2-7> 상계관세 피소 국가(최근 15년간)	28
<표 2-8> 국가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동향(최근 15년간)	30
<표 2-9> 목적별 TBT 통보 비중(최근 12년간)	34
<표 2-10> 품목별 TBT 통보 비중(최근 5년간)	35
<표 2-11> 목적별 TBT STC 제기 현황(최근 15년간)	37
<표 2-12> 연도별 SPS 조치 대상 품목 유형(최근 15년간)	41
<표 2-13> 목적별 SPS STC 제기 현황(최근 15년간)	42
<표 2-14> 산업별 TBT 통보 주요내용	45
<표 2-15> 2021년 1분기 산업별 TBT 통보 누적 비중(건수/비중)	45

그 립 목 차

<그림 2-1> 연도별 TBT 통보 건수(지난 15년간)	32
<그림 2-2> 전 세계 TBT 통보 추이(지난 15년간)	33
<그림 2-3> 연도별 TBT STC 신규제기 건수(최근 15년간)	36
<그림 2-4> 연도별 미통보 기술 규제에 대한 STC 신규제기 건수(최근9년간)	38
<그림 2-5> 연도별 SPS 통보 건수(최근 15년간)	39
<그림 2-6> 신흥국 SPS 통보 추이(최근 15년간)	40
<그림 2-7> 연도별 신규제기 SPS STC 건수(최근 15년간)	42
<그림 2-8> 분기별 최근 TBT 통보건 추이	43
<그림 2-9> 2021년 1분기 TBT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44
<그림 2-10> 2021년 1분기 10대 수출국 TBT 통보문 발행 현황	44
<그림 2-11> 2000년 대비 2021년 1분기 산업별 TBT 통보비중(%)	4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 수출함으로써 국내생산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1964년 처음으로 수출 규모 1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1969년 6억 달러, 1971년 10억 달러, 1977년 10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 세계 수출 규모의 3.1%인 6,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고속 성장을 거듭하였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 교역량 저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239개 국가로부터 5,179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액 기준 전 세계 7위 무역국의 위상을 유지하였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세계 무역질서의 근간을 만들어준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이 매우 크다.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질서를 바로잡고자 23개 선진국에 의해 발기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체제를 기반으로 1994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무역기구로 창립된 WTO는 현재 164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다.

WTO는 수십 년에 걸친 회원국들의 끊임없는 협상 끝에 2차 세계대전 후 22% 수준이었던 세계 평균 관세율을 3% 이하 수준으로 낮추었고, 비관세, 투자, 지적 재산권, 서비스 교역 등과 관련된 규범들을 통해 회원국 간의 교역 활성화를 이루었다. 또한, WTO 체제는 일부 회원국들끼리의 전면적인 상호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이하 FTA)을 가능케 했다. 지난 1970년 전 세계 GDP 대비 27% 수준이던 국제 교역량을 현재 GDP의 60%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성장시켰다. 지금의 이러한 자유로운 무역 환경은

WTO라는 정교한 시스템과 함께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제무역이라는 게임이 가진 태생적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에 기반한 무역체제의 발전은 인류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2015년 12월 유엔기후회의에서 파리협정으로 채택되었고 2016년 11월 4일 국제법으로서 정식효력이 발생했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맺은 협약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배출 1위와 3위인 중국과 인도 등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했다. 2020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의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기후변화대응체제는 기후 위기의 완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재원, 기술, 역량 구축 지원 등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자발적인 기여 정도를 기반으로 한다¹⁾.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탄소 저감 노력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한 이행점검은 각국의 이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목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파리협정이라는 새로운 기후변화대응체제에 대한 기존의 다른 정책 체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통상정책과 관련된 무역 자유화는 기후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를 촉진하고 청정기술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의 기후정책 조치는 서로 상충하는 원칙과 우선순위로 인해 무역규칙과 충돌 할 수 있다. 당사국이 스스로 결정한 감축 목표인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s)를 달성하기 위해

1) 김철수, “환경관련 기술규제의 적법성분석을 통한 신기후체제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 한국무역통상학회, 21(4), pp2-12.

각국은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유해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모든 분야에서 청정기술에 대한 도입과 활용이 필요해졌다. 동시에 국가 기후 정책 조치는 보호주의와 같은 서로 상충되는 원칙과 우선순위로 인해 무역 규칙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자유무역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후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하여 논의하고 평가해야 한다.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정 발효 이후 주요국가인 미국의 정치 환경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미국의 기후 정책과 자유무역 기조를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4일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TPP) 탈퇴에 이어 2017년 6월 1일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였다²⁾. 파리협정은 발효된 지 3년 후 탈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미국은 2019년 11월 4일 정식으로 탈퇴를 유엔에 통보했고, 1년 후인 2020년 11월 4일 탈퇴가 공식화됐다. 그러나 트럼프에 이어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당일인 2021년 1월 20일 파리협정 재가입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다시 복귀함으로써³⁾ 정치적 불안정성은 해소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국제 기후변화 협상은 제한된 성공을 거두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실질적인 정치적 대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제무대에서의 이러한 실패에 대응하여 일부 개별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시작했다. 규제는 배출 집약적 산업, 에너지 유틸리티 또는 운송 부문과 같은 개별 경제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규제는 환경친화적 국가를 유사한 환경 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선제적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한다면 배출 규제가 없는 다른 국가의 제조업체는 선제적 국가의 국내 시장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2) Michael Mehling, "A New Direction for US Climate Policy: Assessing the First 100 Days of Donald Trump's Presidency", 11 CARBON & CLIMATE L. REV. 3, 19 (2017).

3) 경향신문, '바이든, 트럼프 정부 시절 파리협약 탈퇴 공식 사과', 2021.11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11021155001>

따라서 적극적인 국가는 무역 상대국 간의 환경 규제 비용을 균등화하는 무역 정책을 모색할 수 있다. 기후 규제 효과의 경제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술 중 하나는 제조지역과 관계없이 특정 제품 제조과정의 최대 허용 배출량을 의무화하는 “탄소 집약도 표준”의 제정이다.

일반적으로 탄소 집약도는 주어진 제품 또는 기타 경제적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종종 이산화탄소 등가물 또는 "CO₂e"로 측정)을 나타낸다. 탄소 집약도 표준은 1 Ton의 강철, 알루미늄 또는 시멘트와 같은 제품 제조에 대한 최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한 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용 가능한 배출량 수준을 줄여 전반적인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는 것이다. 설정된 탄소 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생산 지역과 관계없이 규제대상이 된다. 탄소 집약도 표준은 규제 국가의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모든 국가의 모든 생산자에게 동등한 배출 제한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탄소 집약도 표준은 교역 파트너 간의 경쟁적 불이익으로 국내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GATT), 세계 무역 기구(WTO),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TBT)협정 및 기타 다자간 협정을 포함한 국제무역 규제 체제는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TBT 협정은 국내 규제를 통한 개별 국가의 무역 규제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GATT 제20조에는 GATT 규칙에 대한 예외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제20조의 서론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차별금지가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중 두 가지는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차별적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에 필요한 경우이거나 국내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제한을 통해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에 효과적일 경우에 차별이 허용된다.

선행연구와 관련해서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들은 여러 분야 중 무역학이나 법학 등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탄소 라벨링(Carbon labeling)⁴⁾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주로 환경 라벨링과 무역체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Lee and Park(2007)의 연구에서는 환경 라벨링의 개념을 다루었으며 환경 라벨링 제도가 국제무역 규범인 WTO 체제하에서의 제재 가능성에 대한 포괄적 논의만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Lee(2011)는 기후 조치의 유형별 관련 쟁점 사항과 TBT 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철수(2019)의 “TBT 협정상 기술규정의 정당한 목적에 관한 해석기준” 연구에서는 ‘상품 무역 관련 공정 및 생산방식(Non-Product-Related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이하 NPR-PPMs)’ 이 가진 문제점과 TBT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규정 및 국제표준 개념’ 이라는 2가지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탄소인증성적제도가 국내에 시행된 이후 탄소 라벨링과 무역법규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Lee(2010))와 Lee(2011)가 있다. Lee(2010)는 탄소 라벨링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NPR-PPMs에 대한 TBT 협정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탄소 라벨링에 대한 국제표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Lee(2011)는 중요한 기후변화 정책방안의 하나로서 탄소 라벨링을 중심으로 WTO의 무역 규범을 살펴보았고, 탄소 라벨링과 관련한 국제표준 제정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외에도 실제 국제무역 분쟁에서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판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 무역분쟁 사례연구들을 참고하였다. Lee(2007), Shim(2015)은 WTO 및 GATT 체제에서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무역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다. EU 석면 사건, 미국 휘발유 사건, 미국

4) 환경라벨링과 탄소라벨링은 ‘환경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매체에 부착 제공되는 도안이나 표시’라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나, 환경라벨링은 △물 △탄소 △동식물보호 △환경호르몬 등의 다양한 정보에 대해 표시할 수 있는 탄소라벨링의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의 재생에너지분야 탄소인증제도는 탄소라벨링제도의 일종이긴 하나, 일반적인 탄소라벨링제도가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오직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의 참치-돌고래 사건 등 대표적인 환경 관련 무역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적 노력이 국제규범 내에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기후협약에 관한 논문이 파리협정 이전에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이고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검토의 대상을 파리협정으로 한정하고, 국제무역체제에 적합한 기후 조치가 가져야 할 필요요건을 살펴보고자 국제 법규 및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기존에 확립된 WTO라는 무역체제와 새롭게 만들어진 신기후체제라는 두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기후 정책과 무역 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기후체제의 정책 조치와 WTO의 무역체제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평가하고, 국제무역체제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대응체제에 어떠한 지원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또한, 기후변화 규제 현황과 탄소 집약도 표준 분석을 통해 기존의 무역협정 안에서의 조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기후문제의 해결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 기준 6억 4,860만t으로 세계 배출국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우리나라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매우 어려운 도전과제이다.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맺은 협약으로 2020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차별성이 있는 신기후체제와 글로벌 통상체제의

상호관계를 조망하기 위해 기후체제의 근간인 파리협정과 국제무역시스템을 파악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인 기술조치 동향 등을 같이 검토하였다.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FTA, 다자간 무역협정과 상충을 살펴보고 보다 세부적인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TBT 협정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인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였고, 제2장은 기후 변화대응체제와 무역체제(WTO 및 RTA 포함), 그리고 무역장벽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기술하고, 제3장은 신기후체제의 무역 규제와 무역협정 간의 비교 검토를 통해 상호 관련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4장은 기후협정과 무역협정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체제 간의 갈등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기후체제와 무역체제 관련 협정문과 관련 논문, 간행물, 사이트(WTO, WCO, IMF, APEC, World Bank) 등을 활용한 문헌 연구와 통계자료, 법령집 등을 활용하였다.

제 2 장 기후협정과 무역장벽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기후체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은 1992년 리우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전 세계 19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목표는 "기후 시스템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협약은 국가별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의무적으로 제출은 하되 목표에 대한 이행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1995년, 관련 당사국들은 선진국의 완화 목표를 규정하는 의정서 협상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현재 192개의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첫 번째 약정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선진 38개국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을 1990년 대비 5.2% 감소시킬 것을 요구하였다.⁵⁾

다음 단계로, 비용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허용하는 여러 가지 시장기반 장치("유연한 메커니즘")를 도입했다. 개발도상국들이 교토의정서에 서명하고 각국이 비준하는 동안, 그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부여되지 않았다. 2012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에서 교토의정서에 대한 개정과 함께 당사국들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새로운 약정 기간에 합의했으나⁶⁾ 개정안은 발효되지 못했다.

기후 변화대응체제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제

5)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Change, May 9, 1992, S. Treaty Doc. No. 102-38, 1771 U.N.T.S. 107 [hereinafter UNFCCC].

6)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Change, Paris ClimateChange Conference November 2015, http://unfccc.int/meetings/paris_nov_2015/meeting/8926.php

는 행동해야 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되풀이해오고 있다. UNFCCC는 처음에는 부속서 I(선진국)과 비 부속서 I(개발도상국)로 구분하여 개별 국가의 책임과 역량에 바탕을 둔 공통원칙을 확립하였다. 교토의정서는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제1 부속서에 속한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요구받았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배출국이 된 중국과 같은 주요 신흥국의 참여를 확대하라는 압력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당사국들은 2000년대 후반 발리 로드맵과 함께 UNFCCC에 따른 새로운 기후 조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새로운 협정의 목적은 장기적인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진정한 글로벌 노력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UNFCCC 당사국 총회(이하 "COP")가 새로운 글로벌 협약 채택에 성공하지 못한 후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의 합의 도출까지 6년의 추가 협상이 필요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UNFCCC의 196개 당사국에 의해 채택되었고, 194개 국가가 서명했으며,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비준되었다.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으며 다음 3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첫째,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2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고 섭씨 1.5도 달성을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 강화, 탄력성 증대 및 저온실 가스 개발을 확립한다. 셋째, 온실가스의 낮은 배출 경로와 기후 회복력 개발을 위한 재정의 일관성 확보 등이다.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에 따른 핵심 의무는 선진국을 포함한 UNFCCC 당사국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자가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를 준비하고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5년마다 검토 및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각국의 새로운 NDC는 이전 목표보다 더 도전적이어야 한다. 이 협정은 "이행 수단"(즉, 재정,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된 의무뿐만 아니라 NDC의 적용과 관련된 조치를 추가로 명시

하고 있다. NDC의 구성 내용은 당사국의 몫이지만, 이 협정은 NDC 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투명성 프레임워크, 이행을 촉진하고 규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 공동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글로벌 평가를 포함하여 이행 및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여러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다.

UNFCCC와 교토의정서는 모두 무역 정책 우려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되는 용어는 기후정책 조치의 보호주의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rade)에서 볼 수 있는 용어와 부분적으로 동일하다. 반면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2007년 발리 액션플랜 이후, 개발도상국들은 기후상의 이유로 선진국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국제 협정에 포함시키고자 하면서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해당 내용이 협정에 포함되길 전혀 원하지 않는 선진국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중대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에 당사자들은 이행 및 대응 조치의 영향에 대한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파리협정은 무역과 기후변화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포럼은 UNFCCC의 맥락에서 무역 관련 관심사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주요 제도적 공간이며, 포럼의 연구대상은 관심 대상인 모든 관련 정책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포럼의 작업 프로그램이 기후-무역의 중첩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대응 조치의 영향 평가에 대한 기술작업은 무역 관련 영향이 고려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응책의 영향 평가에 관한 UNFCCC 지침은 관세 및 국경탄소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 이하 BCA)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제 2 절 국제무역시스템

1.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의 기원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체결된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GATT 체결 이후 거의 반세기 후, 약 9년간의 우루과이라운드 무역 협상(1986-94년)에 따라 WTO가 설립되었다. 현재 WTO는 164개 회원국과 6개의 하위 협정그룹을 가진 국제 무역기구로서 14개의 상품무역협정(예: GATT)과 서비스무역 일반협정(GATS),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등 기타 5개의 협정을 포함하여 총 19개의 국제법적 지위를 가진 협정을 보유하고 있다.

GATT의 핵심 목표는 회원국의 이익을 위해 상품의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그것은 여러 무역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비차별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이 부과하는 무역 조치는 최혜국대우(MFN)처럼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무역 조치는 내국민대우(NT)의무에 준한 "동종" 국내 상품과 비교하여 다른 회원국의 수입 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주요 비차별 원칙은 비교우위 개념에 기반하고 있는데, 비교우위 개념은 (1) 개별 국가가 보유한 풍부한 부존자원을 생산 제품으로 전문화할 수 있고 (2) 생산량이 많을수록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의 질을 증가시킨다. 또한, 자유무역은 다른 나라의 생산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소비재를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GATT 하의 초기 무역 협상은 주로 관세인하를 위한 것이었지만, 도쿄라운드(1973-1979)협상 이후부터 수입허가, 원산지 규칙, 투자 조치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으로 범위를 넓혔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자간 무역체제는 서비스, 지적 재산

권, 기술 표준, 보조금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다루게 되었다⁷⁾.

WTO 체제의 중요한 특징은 GATT의 무역관행을 확장하는 강력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다. WTO와 함께 만들어진 통합 분쟁 해결 시스템하에서, 동일한 분쟁 해결 규칙이 개별 협정의 특별 또는 추가 규정에 따라 사실상 모든 WTO 협정에 따른 분쟁에도 적용된다. 분쟁 발생 시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는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과정은 논쟁 중인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며 보상과 보복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규약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GATT의 외교 규범과 달리,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기존 조약 체제 중 가장 발전된 분쟁 해결 시스템이다.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WTO가 생긴 이래로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왔다. GATT의 분쟁 해결 시스템이 적용되었던 1947년부터 1994년까지 47년간 총 300건의 분쟁이 제기되었던 반면, WTO 출범 이후 20년 동안에 총 500건의 분쟁 제기 건수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활용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⁸⁾.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보다 확실하게 다루기 위해 2001년 도하 개발 라운드로 알려진 새로운 무역 회담이 시작되었다. 도하 라운드는 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에 대한 협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하 각료 선언의 제31항은 기존의 WTO 규정과 다자간 환경협정에 명시된 특정 무역 의무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도하 라운드 협상은 모든 협상 의제가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되어야 전체협상을 종료시킬 수 있는 원칙을 사용한다. 이것은 국가들이 체리 피킹 이슈를 제기하는 것을 막지만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든다. 도하 라운드는 2008년에 대부분 중단되었고 그 이후로 거의 진전

7)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nex 1, Apr. 15, 1994, 1867 U.N.T.S. 154 [hereinafter Agreement Establishing WTO].

8) WTO Director-General, WTO Annual Report 2016 102 (2016),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rep_e/anrep16_chap6_e.pdf

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WTO 회원국들은 2013년 "발리 패키지"와 2015년 "나이로비 패키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2015년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 사이에 중요한 의견 불일치가 지속되어 무역 협상의 교착상태를 초래했다.

다자간 무역에 대한 열망은 1990년대 이후 관세율보다 협상하기가 더 복잡한 많은 무역 관련 이슈들을 포함한 신흥 시장, 권력 이동, 그리고 관련된 국가 및 지역 이익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사그라들었다. 일반적으로 세계 무역에 대한 WTO의 관련성은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WTO 회원국들의 의지에 항상 달려 있었다. 국제 무역법 제정과의 관련성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은 여전히 매우 강력한 제도적 도구이며 회원국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후정책 조치의 WTO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분쟁 해결 시스템은 분쟁 발생 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RTA 체결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거대 지역 협정의 하위 범주인 RTA는 GATT 제24조에 따라 WTO에 통보되어야 한다. 또한, WTO 산하에는 두 개의 독립된 복수국 협정과 MFN 기반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게 양허를 확대하는 복수국 협정이 있다. 다자간환경상품협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후자의 범주에 속하며, 이는 협정이 채택되면 협정의 효력이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됨을 의미한다.

환경 문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따라 세계가 보유한 자원의 최적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무역체제 목표의 맥락을 설명한 WTO 설립협정의 전문에 언급되어있다.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이하 CTE)는 무역 조치와 환경 조치 간의 관계를 구체화하고 WTO 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한다. CTE는 모든 WTO 회원국과 UNFCCC 사무국을 포함한 정부간 기구의 옵서버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도하 라

운드가 시작된 이래로 CTE는 도하개발어젠다의 환경 측면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도하개발어젠다의 전반적인 교착상태와 지역 차원의 협정체결 증가로 인해 CTE는 제한적인 진전만이 이루어졌다. 기후변화는 2007년까지 WTO 논의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2005-2013) 재임 시 기후와 무역 인터페이스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2009년에 이 주제에 대한 유엔 국제 환경 계획과의 공동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1990년대 이후, 기후변화를 포함한 무역과 환경 간의 접점이 주로 GATT/WTO 판례법을 통해 표면화되었다. 개별 분쟁 사례가 두 체제 사이의 주요 마찰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국가 주도 기후 조치를 핵심 접근법으로 하는 파리협정의 이행은 체제들이 생산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명확히 하는 추가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2. 지역간 무역 협정(RTA)

우루과이라운드 무역 협상 동안, 많은 GATT 회원국들은 지역 또는 양자 무역 협정에 의존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과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 MERCOSUR)⁹⁾을 비롯한 미주지역과 유럽에서의 주요 무역 블록 형성 및 강화는 다른 국가들이 그들의 협정에 가입하거나 설립에 참여토록 독려했다¹⁰⁾. 세계화를 배경으로 RTA는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외교 정책 목표를 촉진하며 교역 상대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RTA 체결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무역협정의 "스파게티 볼"로 이어졌다.

9)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이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 공동체

10) Richard E. Baldwin, The Causes of Regionalism, 20 THE WORLD ECONOMY 865, 870-71 (1997)

2016년 2월까지 WTO는 1948년에서 1994년 사이에 GATT에 124건의 통지를 보낸 것에 비해 625건의 RTA 통지를 받았으며 그 중 419건이 당시 발효 중이었다¹¹⁾.

최근 몇 년 동안, "Mega-FTA" 협정의 출현으로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¹²⁾. EU-캐나다 간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은 2014년 8월에 체결되었지만, 2016년에 겨우 EU의 승인을 받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¹³⁾ (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은 2016년 2월에 체결되었다. 새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 협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 거대 지역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과 미국의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협정도 트럼프 대통령 선거 이후 "동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마찬가지다. EU에서는 2009년 리스본 조약에 따라 심화되었던 무역관계의 독점적 역량이 메가 지역 협정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새 정부의 보호주의 아젠다를 감안할 때, 새로운 RTA의 체결 가능성은 당분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조항은 새롭게 체결되는 RTA협정에서 점점 더 많이 채택되고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의 전신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북미환경협력협정(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NAAEC)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미국 RTA들도 그 뒤를 따라 환경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0년대 중반부터

11) See WTO, Evolu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World, 1948-2016, Regional Trade Agreements: Facts and Figure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fac_e.htm(last visited Apr. 10, 2017).

12) Rep. of the World Economic Forum, Global Agenda Council on Trade & Foreign Direct Investment, Mega-regional Trade Agreements

13)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이 합쳐진 지역 협정

제3국과의 RTA에 환경 조항을 통합하기 시작했으며 제3국과의 EU 무역협정은 점점 더 많은 수의 다자간 환경협정과 관련이 있다. 또한, 미국의 무역협정은 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요구되는 환경 조치에 대해 점점 더 구체화 되고 있다¹⁴⁾. 환경보호 조항을 RTA에 포함하는 추세는 향후 지속 될 전망이다.

3. 체제 간 상호작용

파리협정의 채택으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였고 모든 당사국들이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발전적 인식의 변화는 이루었지만,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국제 기후정책에 대한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은 무역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기후 조치의 허용에 따른 유연성이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무역 체제도 최근 몇 년간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비록 지금까지 20년 이상 잘 확립된 무역규칙 제도가 시행되어왔고, WTO 회원국들은 현재 세계의 주요 무역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WTO를 통한 협의 의제의 일괄타결방식은 이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점점 더 늘어나는 RTA 체결 건수와 최근 새로운 거대 지역 협정의 탄생으로 국제무역 규칙을 제정하는 WTO의 관련성과 지배력이 도전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에 있어 지금까지 WTO가 가진 지배적인 입장은 지침이 부족하고 새로운 상호 지원 규정에 대한 논의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후체제에 기회와 위험 둘 다 제공할 수 있다.

두 체제는 지금까지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대로 공존해 왔다¹⁵⁾.

14) See Sikina Jinnah & Elisa Morgera, Environmental Provisions in American and EU Free Trade Agreements: A Preliminary Comparison and Research Agenda, 22 REV. OF EUR., COMP. & INT'L ENVTL. L. (2013).

15) See HARRO VAN ASSELT, supra note 27, at 166; Robyn Eckersley, Understanding the Interplay Between the Climate and Trade Regimes, in CLIMATE AND TRADE POLICIES IN

하지만, 이것은 최근 몇몇 기후와 관련된 분쟁의 출현과 함께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두 체제가 모두 기रो에 서 있다는 사실은 기후변화, 무역, 그리고 개발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규칙과 절차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제 3 절 무역장벽의 검토

무역장벽(Trade Barrier)은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해 수입국의 정부가 자국 내로 유입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한조치로 관세장벽(Tariff Barriers, TBs)과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으로 구분된다. 관세장벽은 자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 수입 물품에 신규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설정하거나 기존에 설정된 관세율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반면, 관세에 의하지 않는 모든 수입제한조치를 총칭하여 비관세장벽이라고 한다. 비관세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입 허가절차, 수량 제한, 쿼터,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있으며 미국산 우선 구매법(Buy American Act)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지난 2021년 1월 20일 출범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25일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을 강화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바이 아메리카 관련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이행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은 생명과 관련된 의료나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요소를 제외한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장려하는 많은 국가들도 농업이나 철강산업 등 자국의 기반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국 내 산업 보호를

A POST-2012 WORLD (Geneva: UNEP) 11, 11-18 (Benjamin Simmons et al. eds., 2009).

위해 다양한 규제 조치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로는 미국을 들 수 있으며, 중국, EU, 일본 그리고 한국도 비관세장벽 조치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에 속한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조치로는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과 동식물 위생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이하 SPS) 등이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조치 가운데 TBT의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으며 SPS가 그 뒤를 이어 많이 사용하는 비관세장벽 조치이다¹⁶⁾. <표2-1>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표 2-1> 무역장벽 유형 분류

구분	대분류	소분류
관세장벽 (Tariff Barriers)		관세(Tariff)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	수입규제 (무역규제)	- 반덤핑관세(AD : Anti-dumping duty) - 상계관세(CVD : Countervailing duty) - 세이프가드(SG : Safeguard)
	기술적조치	- 위생·검역(SPS :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기타무역제한조치 - 통관제도·절차 - 출입통제(수입금지·허가, 수량규제, 가격통제) - 정부조달 - 투자·서비스장벽 - 지적재산권 - 반경쟁조치 등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자료 재인용 정리

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20 글로벌 비관세장벽 동향, 2020년 5월

1. 비관세장벽의 특징과 목적

1) 비관세장벽의 정의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총칭하여 부르는 용어로 공식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UN의 비관세장벽에 관한 ‘전문가 그룹(Group of Eminent Person on Non-Tariff Barriers)’이 정의한 교역되는 상품의 수량이나 가격을 변화시켜 잠재적으로 국제교역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 조치’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진다. 비관세장벽과 유사한 개념으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가 혼용되고 있는데 해당 비관세조치로 인해 특정 국가의 기업이 비용 부담 등의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에 한해서 비관세장벽으로 분류 가능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비관세조치로 인한 ‘잠재적 어려움’의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장벽’과 ‘조치’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비관세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입허가, 수출통제, 복잡한 통관절차,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있다.

〈표 2-2〉 비관세장벽 사례

구분	사례
수입규제 (무역규제)	- 반덤핑관세(AD : Anti-dumping duty) - 상계관세(CVD : Countervailing duty) - 세이프가드(SG : Safeguard)
기술적조치	- 위생·검역(SPS :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기타무역제한조치 - 통관제도·절차 - 출입통제(수입금지·허가, 수량규제, 가격통제) - 정부조달 - 투자·서비스장벽 - 지적재산권 - 반경쟁조치 등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자료 재인용 정리

2) 비관세장벽의 특징과 목적

비관세장벽은 추가 비용을 초래하여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비관세장벽이 만들어 내는 비용 부담은 관세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UNCTAD 보고서(Research Paper No. 42, 2020/1)는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규격을 요구함에 따라 기업이 제품설계나 생산을 위한 라인을 변경하기 위해 발생하는 직접 이행(Compliance)비용을 포함하여 수출국의 국경 통과를 위해 거쳐야 할 제품 시험과 인증 등의 간접 준수비용, 수입허가를 위한 통관서류 및 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 비용 등의 제반 비용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이다.

각국은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통해 다른 나라의 상품 생산자와 수출자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발생시킴으로써 WTO 및 FTA 체제 내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3) 글로벌 비관세장벽의 동향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대신 전 세계적으로 비관세장벽의 도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47년에 만들어진 GATT 체제하에서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노력이 이어졌으며 1995년 WTO 체제 출범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전통적 무역장벽으로 기능하던 관세장벽은 그 효용성이 서서히 약화 되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실행관세율은 WTO 체제 출범 해인 1995년 12.24%를 기준으로 2017년 5.7%로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다. 이러한 관세인하를 대체하여 개별 국가들은 비관세장벽의 도입을 통하여 자국의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새롭게 이용하고 있다.

신규 비관세장벽은 기술조치를 중심으로 2019년 기준으로 5,200건을 돌파하

였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으로 대표되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비관세장벽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WTO 회원국의 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 통보 건수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총수입규제 조사개시는 반덤핑 제소 급감으로 감소세이나 타 규제에 비해 발동 요건이 용이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3〉 전세계 신규 비관세장벽 추이(조사개시/통보건수)

연도	기술적조치			수입규제				기 타	총계
	TBT	SPC	소계	반덤핑 (AD)	상계관세 (CVD)	세이프가드 (SG)	소계		
2005	897	856	1,753	187	6	7	200	N/A	최소 1,953
2006	1,032	1,156	2,188	35	1	3	39	N/A	최소 2,227
2007	1,229	1,196	2,425	161	11	8	180	N/A	최소 2,605
2008	1,523	1,264	2,787	211	16	10	237	N/A	최소 3,024
2009	1,893	1,019	2,912	216	28	25	269	156	3,337
2010	1,869	1,408	3,277	176	10	20	206	168	3,651
2011	1,773	1,391	3,164	168	25	12	205	264	3,633
2012	2,196	1,219	3,415	210	23	24	257	164	3,836
2013	2,140	1,299	3,439	287	33	18	338	177	3,954
2014	2,240	1,634	3,874	236	45	23	304	167	4,345
2015	1,977	1,681	3,658	229	31	17	277	232	4,167
2016	2,332	1,392	3,724	298	34	11	343	138	4,205
2017	2,580	1,479	4,059	249	41	8	298	122	4,479
2018	3,065	1,632	4,697	205	55	19	279	127	5,103
2019	3,337	1,762	5,099	100	15	30	145	N/A	최소 5,244

자료 : WTO(Trade Policy Review Body, Annual Report 2019/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int'l trading environment 2020)

2. 유형별 비관세장벽

1) 반덤핑 (AD, Anti-Dumping)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자국시장에서 판매하는 동종 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덤핑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반덤핑(AD)조치라 한다. 반덤핑(AD)조치란 덤핑이 수입국 경제에 피해를 유발하거나 국제무역을 교란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수출기업의 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무역구제조치다. GATT 제 VI조('94)는 반덤핑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WTO 부속협정인 '반덤핑 협정'은 조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¹⁷⁾

일반적으로 반덤핑조치의 흐름은 조사개시, 예비판정 및 잠정조치, 최종판정, 재심, 종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첫 단계인 조사개시는 국내 산업의 신청 및 증거검토나 조사 당국의 직권개시 등이 가능하며 통상 1년에서 최대 18개월 정도 소요되나 최근 그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이다. 조사를 통해 국내산업의 피해발생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고 조사기간 중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통상 4~6개월 동안 부과한다. 최종판정을 통해 반덤핑관세 부과여부 및 액수를 결정한다. 조사당국의 검토를 거쳐 상황변화 재심을 실시하고 재심결과 조치 불 필요시 즉시 종료하고 필요시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연장하여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미국발 조사개시는 증가하였다.

반덤핑조치에 대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증가세를 나타내다 2017~2019년 기간 동안 감소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2007년 552건, 2014~2016년 766건으로 최대치를 기록 후 2017~2019년 554건으로 감소하였다. 조사개시국가의 숫자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2017~2019년 기간 동안 감

17) 박노형 등 28인, 『新국제경제법』, 박영사, 2012.

소하였으며 피소국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60개국 내외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 추이를 보면 미국, 인도, 중국 등이 자국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한 반덤핑 조사개시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자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사개시가 늘어나면서 2017~2019년 기간 동안 인도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하였다. <표 2-4>는 최근 15년간 반덤핑 조사개시 상위 10개국에 대한 현황이다.

〈표 2-4〉 반덤핑 조사개시 상위 10개국(최근 15년간)

연도 순위	'05~'07	'08~'10	'11~'13	'14~'16	'17~'19
1위	인도(99)	인도(127)	브라질(117)	인도(137)	미국(110)
2위	EU(68)	브라질(70)	인도(69)	미국(98)	인도(100)
3위	미국(42)	아르헨티나(58)	미국(65)	브라질(69)	중국(50)
4위	중국(38)	EU(50)	호주(50)	호주(49)	아르헨티나(37)
5위	브라질, 터키(31)	파키스탄(40)	아르헨티나(38)	터키(45)	호주(35)
6위	남아공(30)	미국, 중국(39)	EU(37)	EU(40)	캐나다(28)
7위	한국(26)	터키(33)	캐나다(30)	아르헨티나(37)	EU(24)
8위	아르헨티나(25)	호주(21)	인도네시아(27)	파키스탄(36)	우크라이나(20)
9위	이집트(23)	인니(16)	중국(25)	캐나다(30)	한국(16)
10위	호주(18)	러시아, 이스라엘(12)	터키(24)	멕시코(29)	브라질, 멕시코, 터키(14)
기타	17개국(121)	20개국(86) 한국 16위(8)	20개국(183) 한국 20위(10)	26개국(196) 한국 17위(14)	20개국(92)
합계	28개국 552건	32개국 603건	30개국 665건	36개국 766건	32개국 554건

자료 : WTO I-TIP(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중국은 전 세계 국가로부터 반덤핑 피소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4~2016년 기간을 정점으로 최근 3년('17~ '19)간 세계 각국이 제기한 대 중국 제소건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국가별 피소건수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반덤핑 피소건수는 중국(1위), 한국(2위), 태국(3위), 대만(4위), 일본·인도(5위) 순이다. 아래 <표 2-5>은 최근 15년간 반덤핑 피소국가 상위 10개국에 대한 현황자료이다.

<표 2-5> 반덤핑 피소 상위 10개국(최근 15년간)

연도 순위	'05~'07	'08~'10	'11~'13	'14~'16	'17~'19
1위	중국(182)	중국(195)	중국(187)	중국(228)	중국(146)
2위	한국(33)	미국(41)	한국(58)	한국(67)	한국(40)
3위	대만(31)	대만(28)	대만(48)	인도(40)	태국(26)
4위	미국(30)	한국, 태국(26)	미국, 태국(32)	대만(33)	대만(24)
5위	태국, 인니(27)	인니(25)	인도(28)	일본(27)	일본, 인도(21)
6위	말련, 인도(24)	말련(21)	일본(22)	베트남(24)	미국, 말련(18)
7위	일본(20)	EU(19)	인니(19)	말련,	브, 러, 터, 베(16)
8위	러시아(16)	브라질(17)	말련(17)	태국(22)	인니(14)
9위	브라질(12)	인도(16)	EU(16)	미국, 터키(21)	EU(12)
10위	EU, 우크라이나(10)	일본(13)	터키, 베트남(14)	인니, 브라질(20)	이탈리아(10)
기타	41개국(106)	55개국(177)	50개국(178)	47개국(197)	47개국(140)
합계	54개국 552건	66개국 604건	62개국 665건	60개국 766건	62개국 554건

자료 : WTO I-TIP(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2) 상계관세(CVD, Countervailing Duty)

상계관세(CVD)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품이 자국시장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수입국이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해당 수입상품에 대하여 보조금 액수에 상응하는 특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보조금의 효과를 인위적으로 상쇄하는 대응 조치이다. WTO 부속협정 중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규정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계관세 조치는 조사개시, 예비판정, 현지실사, 최종판정, 재심/종료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조사개시는 회원국 내 관련 산업계의 청원에 의해 주로 개시되며 정부 당국에 의한 독자개시 건수는 아주 미미하다. 산업계의 청원이 접수되면 조사 당국은 피 조사국 정부 및 기업에 질의서를 송부 하게 된다. 조사 당국은 피 조사국 정부·기업의 답변서와 기타 자료에 기반하여 산업피해를 입증한 후에 예비판정을 내리며 보조금 긍정 시 상계관세의 부과를 시작한다. 이후 현장실사를 통해 조사 당국 조사관이 피 조사국 정부와 기업을 방문하여 실무문제를 제기한다. 조사 당국은 현지실사 등의 최종검토를 통해 5년간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하거나 예비판정을 통해 부과된 상계관세를 취소하기 기부과된 상계관세 환급 등의 최종판정을 내린다.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된 경우 5년 경과 후 일몰재심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2005년~2007년 사이 25건에서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11건으로 급증하였다. 같은 기간 조사개시 국가의 수는 7개국에서 13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피소대상국도 10개국에서 25개국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조사개시 건수는 2018년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둔화하여 2019년에는 감소하였으나 향후 미 중 무역분쟁의 향방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개시 대상국을 분류해 보면 미국·캐나다·EU 등의 선진국들이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개시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선진국의 조사개시 비중은 전반적으로 80% 전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0년대 이후 신흥국이 자원 수출 의존도 저하를 도모하고자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를 경계하여 조사를 확대한데 기인한다. 선진국의 상계관세 조사개시 확대에 대응, 신흥국도 상계관세 조치를 도입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인도 10건, 대만 5건, 중국 4건 등의 상계관세 조사개시가 이루어졌다.

<표 2-6> 상계관세 조사개시 국가(최근 15년간)

연도 순위	'05~'07	'08~'10	'11~'13	'14~'16	'17~'19
1위	미국(12)	미국(23)	미국(33)	미국(57)	미국(59)
2위	캐나다, EU(각4)	EU(12)	EU(15)	캐나다(17)	캐나다(15)
3위	칠레(2)	캐나다(5)	캐나다(12)	호주(12)	인도(10)
4위	호주, 브라질, 페루(각1)	호주, 중국(각4)	브라질(6)	이집트(8)	EU(7)
5위	-	페루, 남아공(각2)	호주(5)	EU(5)	대만(5)
6위	-	인도, 터키(각1)	멕시코(4)	브라질, 인도(각2)	중국(4)
7위	-	-	중국(3)	중국, 뉴질랜드, 페루, 러시아, 파키스탄, 터키, 우크라이나(각1)	호주(3)
8위	-	-	파키스탄(2)	-	뉴질랜드, 페루(각2)
9위	-	-	페루(1)	-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우크라이나(각1)
합계	7개국 25건	9개국 54건	9개국 81건	14개국 110건	13개국 111건

자료 : WTO I-TIP(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상계관세 제소대상 국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최다 대상국은 중국과 인도이다. 최근 3년간 중국의 보조금을 겨냥한 조사가 전체의 3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도가 11.6%를 점유해 두 국가의 제소대상 조사건수가 전체의 절반에 근접한다. 카자흐스탄, 브라질 등 기존의 자원 수출국이 제소 대상국에 추가되었으며 제소 대상국 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다 많은 국가로 다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20년 4월에 환율 상계관세를 도입하여 인위적 통화가치 절하를 부당 보조금으로 판단하여 베트남산 타이어를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각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 및 산업발전에 대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조치로서 그 성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이 복잡하여 국가 간의 입장 조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표 2-7〉 상계관세 피소 국가(최근 15년간)

연도 순위	'05~'07	'08~'10	'11~'13	'14~'16	'17~'19
1위	중국(10)	중국(30)	중국(33)	중국(43)	중국(43)
2위	인도(3)	미국(7)	인도(13)	인도(14)	인도(13)
3위	한국, 미국, 인니, 아르헨티나(각 2)	인도(4)	인니(6)	터키(10)	터키(6)
4위	브라질, 프랑스, 말련, 태국(각 1)	EU, 말련(2)	베트남(4)	한국(8)	태국, 베트남(각 5)
5위	-	한국, 베트남, 인니, 아르헨티나, UAE, 태국, 파키스탄, 이란 (각 1)	한국, 미국, 태국, 오만(각 3)	베트남(4)	미국(4)
6위	-	-	EU, UAE, 터키(각 2)	러시아, 브라질, 인니, 오만, 말련(각 3)	카자흐스탄, 인니, 캐나다 (각 3)
7위	-	-	남아공, 파키스탄, 말련, 아르헨티나, 사우디, 에콰도르, 대만(각 1)	캐나다, 대만, 우크라이나, 파키스탄(각 2)	한국, 브라질, 말련, 호주, 아르헨티나, 이집트 (각 2)
8위	-	-	-	필리핀, 태국, 미국,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멕시코, 스리랑카, 트리니다드 (각 1)	노르웨이, 오만, 스페인, 파키스탄, 뉴질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스리랑카, 우즈베크 (각 1)
합계	10개국 25건	14개국 54건	18개국 81건	23개국 111	25개국 112건

자료 : WTO I-TIP(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3) 세이프가드(SG, safeguard)

세이프가드(safeguard)는 특정 수입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수입품과 동일한 상품이나 직접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국이 취하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쿼터 등의 형태로 취해진다. 세이프가드의 발동근거는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즉 세이프가드 협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별한 제한 조건 없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조치의 발동이 가능하며, 무역 상대국 또는 기업이 어떠한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조사개시, 조치적용, 조치종료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조사개시는 조사 당국이 해당 물품의 수입량 증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거나 혹은 유발할 우려 여부, 상대국 물품의 수입증가와 국내 산업피해 간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 후 발동을 개시한다. 이후 조치적용을 진행하는데 원칙적으로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를 위한 필요 범위내에서 적용 가능하며 적용형태로는 관세인상, 수량제한, 관세쿼터 등이 있다. 이들 조치는 모든 나라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치 지연 시 치유가 어려운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이거나, 그러한 피해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중대 상황 시에는 최장 200일간의 기한 내에서 관세인상을 통한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만약 잠정조치를 취했다면 적용 기간이 1년을 초과 할 경우, 개시된 수입제한 조치를 정기적으로 완화해야 하는 점진적 자유화를 실시해야 한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장 4년간 조치적용이 가능하며 연장 시 잠정조치 및 최초적용 기간 포함 8년 이내, 개도국은 총 10년 이내이다. 동일상품에 대한 재조치는 이전 적용 기간 만큼 유예기간 경과 후 조치 발동이 가능하다. 단, 개도국 여부 및 조치 기간에 따라 예외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세이프가드 조치의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2005년~2007년에는 28건, 2017년~2019년에는 5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사 개시국은 점진적으로 중2005년~2007년 15개국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최근에는 20여 개국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다른 무역조치에 비해 발동 요건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등 신흥국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7년~2019년 기간에는 중간재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인 파스타, 비누, 가루세제와 같은 완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도입하는 추세로 이러한 완제품에 대한 조사개시가 증가하고 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조사역량의 한계를 가진 신흥국들이 상대적으로 발동 요건이 용이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조치에 비해 세이프가드는 실질적인 수입량 증가만으로도 조치의 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2-8〉 국가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동향(최근 15년간)

연도 순위	‘05~’07	‘08~’10	‘11~’13	‘14~’16	‘17~’19
1위	터키(8)	인도(12)	인니(11)	인도(10)	마다가스카르(8)
2위	요르단(3)	인니(9)	인도, 이집트(각5)	칠레, 이집트, 인니, 말련, 터키 (각4)	인니(7)
3위	캐나다, 인니, 튀니지, 우크라이나 (각2)	우크라이나(6)	러시아, 콜롬비아(각4)	튀니지, 베트남(각3)	필리핀, 터키(각 5)
4위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에티오피아, 모로코,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남아공 (각1)	도미니카공화국(5)	칠레, 우크라이나(각3)	바레인, 요르단,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 남아공, 태국, UAE(각2)	인도, 우크라이나 (각4)
5위	-	요르단, 키르기스 (각3)	호주, 필리핀, 남아공, 태국, 터키(각2)	중국,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쿠웨이트, 우크라이나, 잠비아 (각1)	모로코, 러시아 (각 3)
6위	-	모로코, 필리핀, 터키 (각2)	브라질,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키르기스, 말련, 모로코, 대만, 베트남(각1)	-	미국, 코스타리카, 사우디, 남아공(각 2)
7위	-	브라질, 칠레, 크로아티아, 에콰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멕시코, 페루, 태국, 베트남 (각1)	-	-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요르단, 파나마, 베트남(각1)
합계	15개국 28건	20개국 55건	20개국 54건	23개국 60건	22개국 57건

자료 : WTO I-TIP(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신흥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세이프가드를 활용하고 있는데 2018년 미국이 한국제품인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발동한 세이프가드 등은 미국 국내 해당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18년 기준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4위, 태양광 제품 수입시장점유율은 2위를 차지하였다는 분석 수치가 연관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기술적 조치

두 번째 비관세장벽인 기술조치(TBT, SPS)는 인간안전, 환경보호 등 무역 이외의 목적이 명문화된 것으로, 조치로 인해 무역에 영향을 받는 국가가 무역장벽을 이유로 분명하게 시비를 판정하거나 즉각적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GATT 20조에 자유무역의 일반적 예외 조건 중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명시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기술적 조치는 무역 저해요소로 판정하기에 매우 모호한 어려운 점이 있다. 세부적인 기술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역 기술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WTO 협정 중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TBT협정’으로 칭하며,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 절차가 국제무역을 저해하지 않고 국제표준에 기여하며 회원국의 권리행사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술규정은 동 협정 부속서에 의해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그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면서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로 정의된다. 또한, 동 협정 제 2조에 의거, WTO 회원국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규정을 도입할 시 WTO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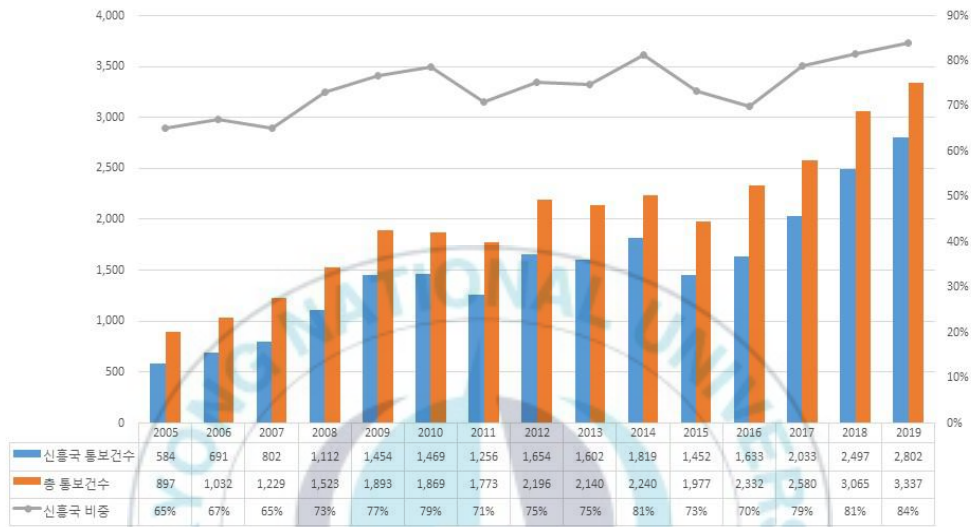
TBT 통보 건수는 2005년 897건, 2015년 1,977건을 기록하면서 이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TBT 통보 확대가 이러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TBT 통보 건수 가운데 신흥국의 비중은 2005년 65%에서 2019년 84%로 늘어났다. 1995년~2018년 기간 동안 신규 통보 건수 상위 5개국은 미국(3,468), 브라질(1,727), EU(1,576), 케냐(194) 순이었으나 2019년에는 신규 통보 건수 상위 5개국이 우간다(442), 에콰도르(331), 미국(270), 브라질(200), 케냐(194) 등의 순서로 바뀌었다. 특히, 우간다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최빈국의 TBT 활용 비중이 2005년 0%에서 2016년 10%를 기점으로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며 2019년에는 21%에 이르고 있다. 이들 최빈국의 TBT 통보는 주로 식품기준, 동물사료, 농약·비료·살충제 관련 분야로 파악되며, 국가표준 정리를 위한 집중적인 기술규정 정비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림 2-1> 연도별 TBT 통보 건수(지난 15년간)



자료 : WTO TBT-IMS

〈그림 2-2〉 전 세계 TBT 통보 추이(지난 15년간)



자료 : WTO TBT-IMS

TBT 통보조치에 대한 가장 주요한 도입 목적은 주로 건강 및 안전, 무역장벽 완화 등이다. 아울러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라벨링과 동식물보호 목적 통보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도입 목적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시험·인증·표준 등의 적합성 평가결과를 공유하거나 수입규정을 완화한 경우, ‘국제표준 조화’, ‘무역장벽 완화’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2019년 말 이후 각국의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및 약품 긴급수입을 위한 조치가 WTO에 ‘무역장벽완화’ 목적으로 통보되고 있다. 향후 파리협정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 관련한 기술조치의 증가가 예상된다.

〈표 2-9〉 목적별 TBT 통보 비중(최근 12년간)

분야	연도	'08~'10		'11~'13		'14~'16		'17~'19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강 및 안전		2,031	45.5%	2,924	48.7%	3,194	48.0%	4,159	36.1%
무역장벽 완화		436	9.8%	632	10.5%	749	11.3%	1,939	16.8%
라벨링(소비자정보제공)		141	3.2%	286	4.8%	273	4.1%	1,374	11.9%
소비자보호		718	16.1%	748	12.5%	1,111	16.7%	1,325	11.5%
품질보장		390	8.7%	806	13.4%	760	11.4%	1,077	9.3%
환경보호		167	3.7%	157	2.6%	155	2.3%	432	3.8%
국제표준과의 조화		24	0.5%	11	0.2%	2	0.03%	40	0.3%
동식물보호		100	2.2%	140	2.3%	150	2.3%	546	4.7%
국가안보		18	0.4%	18	0.3%	10	0.2%	13	0.1%
비용절감 및 생산성		117	2.6%	70	1.2%	141	2.1%	229	2.0%
기타		274	6.1%	190	3.2%	106	1.6%	332	2.9%
구체적 언급 없음		45	1.0%	19	0.3%	3	0.0%	53	0.5%
합 계		4,461	100%	6,001	100%	6,654	100%	11,519	100%

자료 : WTO TBT-IMS / 주 : 중복 집계, '05- '07년 통계입수 불가

분야별 추이를 보면 최근 5년간 식·의약품을 위주로 한 화학세라믹, 정보디지털, 바이오환경 분야의 통보 건수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전기전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디지털·바이오환경 분야 통보추세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표 2-10〉 품목별 TBT 통보 비중(최근 5년간)

연도 품목	2014		2015		2016		2017		2018	
	통보 건수	비중	통보 건수	비중	통보 건수	비중	통보 건수	비중	통보 건수	비중
식·의약품	826	36.9%	717	36.1%	700	30.0%	946	36.7%	1,076	35.1%
화학세라믹	202	9.0%	216	10.9%	299	12.8%	395	15.3%	542	17.7%
전기전자	383	17.1%	261	13.1%	305	13.1%	279	10.8%	281	9.2%
교통/안전	133	5.9%	119	6.0%	186	8.0%	185	7.2%	253	8.3%
생활용품	181	8.1%	183	9.2%	158	6.8%	175	6.8%	248	8.1%
건설	69	3.1%	46	2.3%	88	3.8%	100	3.9%	156	5.1%
기계	107	4.8%	108	5.4%	85	3.6%	74	2.9%	134	4.4%
에너지	70	3.1%	63	3.2%	114	4.9%	110	4.3%	97	3.2%
소재나노	87	3.9%	57	2.9%	85	3.6%	63	2.4%	87	2.8%
농수산물	95	4.2%	138	6.9%	197	8.4%	144	5.6%	75	2.4%
정보디지털	24	1.1%	35	1.8%	51	2.2%	63	2.4%	65	2.1%
바이오환경	9	0.4%	1	0.1%	22	0.9%	22	0.9%	33	1.1%
기타	54	2.4%	44	2.2%	42	1.8%	24	0.9%	18	0.6%
합계	2,240	100%	1,988	100%	2,332	100%	2,580	100%	3,065	100%

자료 : 국가표준원, 2018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 19.7) / 주 : 품목분류는 국가표준원 기준, WTO 기준별은 미발표

TBT 특정무역현안(Special Trade Concern, STC)은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 3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안덕근·김민정(2018)은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에서 특정무역현안(STC)은 WTO 회원국들이 이미 TBT 조치에 대한 통보문을 통해 통보되었거나 기술규제조치가 시행 중인 무역 상대국

에 대해 매년 3회 개최되는 WTO TBT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이의 사항이다. 특정무역현안(STC)은 TBT 통보문과 비교하여, 발동된 규제나 조치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과 진행절차의 투명성 여부 그리고 과도한 수준 등을 지적하기 위해 제기되는 것으로, 실제로 특정무역현안(STC)에 포함된 내용은 무역기술장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특정무역현안(STC)에 대한 주요 제기국가는 EU, 중국 미국 등이고 대상국가는 EU, 미국, 캐나다 등이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5년간 특정무역현안 제기 상위 5개국은 EU(125건), 중국(75건), 미국(71건), 한국(38건), 인도·브라질(28건) 순이며 제기대상 타겟국가는 EU(268건), 미국(250건), 캐나다(120건), 멕시코(91건), 일본(87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연도별 TBT STC 신규제기 건수(최근 15년간)



자료 : WTO I-TIP

특정무역현안(STC)의 제기는 건강·안전, 무역장벽 완화, 소비자 정보 및 보호 목적으로 주로 제기되고 있다. 라벨링 비중은 2010년 초에 정점을 기록한 후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2005년~2007년 기간 대비 약 4배 정도로 눈에 띄게 증가

하였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건강·안전 및 무역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한 STC의 비중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해당 분야에 대한 주도권 경쟁의 격화에 대한 대비와 함께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체제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표 2-11〉 목적별 TBT STC 제기 현황(최근 15년간)

분야	연도	'05~'07		'08~'10		'11~'13		'14~'16		'17~'19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강 및 안전		35	37.2%	48	29.6%	82	30.3%	69	35.0%	42	31.8%
무역장벽 완화		20	21.3%	19	11.7%	42	15.5%	25	12.7%	27	20.5%
라벨링(소비자정보제공)		3	3.2%	15	9.3%	45	16.6%	29	14.7%	17	12.9%
소비자보호		8	8.5%	23	14.2%	34	12.5%	29	14.7%	14	10.6%
품질보증		14	14.9%	11	6.8%	38	14.0%	17	8.6%	4	3.0%
환경보호		0	0.0%	25	15.4%	4	1.5%	11	5.6%	9	6.8%
국제표준과의 조화		7	7.4%	11	6.8%	15	5.5%	9	4.6%	4	3.0%
동식물보호		5	5.3%	4	2.5%	3	1.1%	0	0.0%	4	3.0%
국가안보		1	1.1%	4	2.5%	3	1.1%	3	1.5%	7	5.3%
비용절감 및 생산성		1	1.1%	2	1.2%	5	1.8%	5	2.5%	4	3.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구체적 언급 없음		0	0.0%	0	0.0%	0	0.0%	0	0.0%	0	0.0%
합 계		94	100%	162	100%	271	100%	197	100%	132	100%

자료 : WTO TBT IMS (목적별 중복 있음)

한편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미통보 기술규제인 숨은 규제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국에 의해 STC가 제기될 수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이러한 숨은 규제로 제기된 건수가 총 11건이며 이를 분야별로 나누면 식의약품분야 4건, 전기전자, 화학세라믹, 에너지, 정보디지털 분야가 각 1건, 기타 3건 등이다. 이를 목적별로 구분하면 건강 및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정보제공 등이 각각 2건, 기타 2건, 품질규정 1건 등이다. 제기된 대상국은 EU 4건, 중국, 태국, 미국, 러시아,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중동걸프표준화기구(G80)등이 각각 1건 이다. 숨은 규제인 WTO 미통보 규제는 전문인력에 의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므로 수시 모니터링 및 STC 제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 2-4〉 연도별 미통보 기술규제에 대한 STC 신규제기 건수(최근 9년간)



자료 : 2018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국가기술표준원 (2019.7) / 동 건수는 전체 신규 STC제기건수 내 포함됨

2)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 PhytoSanitary measures)

두 번째 기술적 조치인 SPS는 WTO협정 중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SPS협정 이라고 부른다. SPS협정의 부속서에 의해 식품에서 기인하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상 위험과 질병 또는 병충해로 인한 인간,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회원국의 조치를 SPS 조치라고 정의한다. SPS협정 제7조에 의거 WTO회원국은 조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식물위생에 관한 조치를 변경할시 관련 내용을 WTO사무국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TBT협정 제15조에는 당사국이 발동하는 조치가 TBT협정과 SPS협정의 동시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SPS협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SPS 통보건수는 2005년 856건에서 2019년 1,76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6년 이래 줄곧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식품안전 및 방역조치와 연계하여 앞으로도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5> 연도별 SPS 통보 건수(최근 15년간)



자료 : WTO SPS-IMS

신흥국들의 SPS통보 비중은 2009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60~70%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5년 기간 동안 신규로 SPS를 통보한 상위국가는 미국(2,121건), 브라질(1,500건), 중국(1,069건), 캐나다(1,063건), 페루(769건) 순이다. 최근 2019년에는 신규 SPS통보건수 상위 5개국으로 브라질(134건), 일본(102건), 미국(96건), 캐나다·페루(58건), 우간다(57건)등으로 나타나 중동과 중남미 지역이 활발하게 신규제기를 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지역별 통보건수 비중은 아시아(28%), 중남미(24%), 북미(13%), 중동(12%), 아프리카(11%), 유럽(8%), CIS(4%)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신흥국 SPS 통보 추이(최근 15년간)



자료 : WTO SPS-IMS

전 세계적으로 발동되는 SPS통보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식물 전염병 방역 위한 조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도 통보조치의 주요 대상을 차지하고 있다. 통보건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가공식품 등은 서로 비슷한 비중의 통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광우병, 2010년 구제역, 2018년~2020년 돼지열병, 2016년 조류독감, 2017년 소나무재선충 등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동·식물 전염병과 연계된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식물류 및 가공식품 관련 조치를 주시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는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에 대비가 필요하다. 2018년 기준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규모는 93억 불로 우리나라 수출의 1.5%를 차지한다. 기계·전자기기 및 동·식물 유지제품 관련 조치 비중도 최근 3년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12>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SPS 조치 대상 품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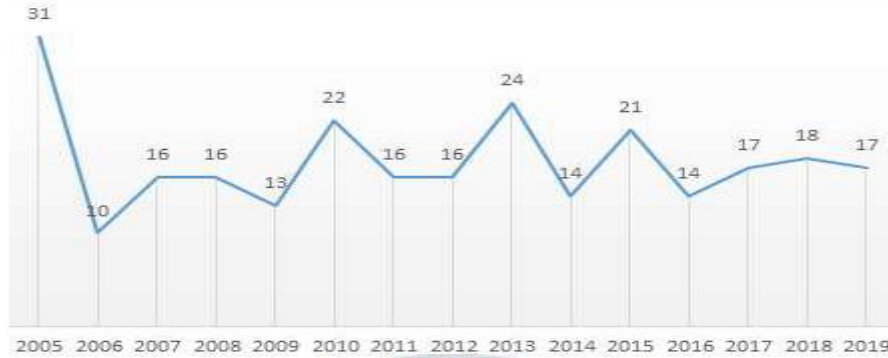
〈표 2-12〉 연도별 SPS 조치 대상 품목 유형(최근 15년간)

품목	연도	'05~'07		'08~'10		'11~'13		'14~'16		'17~'19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식물		544	22%	801	25%	731	24%	857	23%	1,305	28%
살아있는 동물류		442	18%	649	21%	536	18%	610	17%	963	20%
세번분류되지 않은 품목		974	40%	773	24%	1053	35%	1,338	37%	734	16%
가공식품(음료, 주류, 식초, 담배 등)		206	8%	464	15%	335	11%	373	10%	704	15%
동식물 유지(油脂)·왁스		48	2%	71	2%	94	3%	151	4%	309	7%
화학제품		116	5%	251	8%	182	6%	173	5%	255	5%
기계·전자기기		18	1%	28	1%	30	1%	17	0.47%	184	4%
철강·금속		-	0%	11	0.35%	3	0.10%	5	0.14%	48	1%
자동차·항공기·선박		5	0.20%	1	0.03%	4	0.13%	5	0.14%	48	1%
레진·플라스틱·고무		25	1%	52	2%	31	1%	41	1%	38	1%
무기		-	0%	-	0.00%	1	0.03%	1	0%	39	1%
섬유		11	0.45%	10	0.32%	13	0.43%	21	1%	31	1%
나무·코르크제품		48	1.95%	23	1%	9	0.30%	20	1%	27	1%
가죽제품·여행용품		7	0.28%	2	0.06%	7	0.23%	6	0.16%	5	0.11%
제지		1	0.04%	3	0.10%	4	0.13%	5	0.14%	10	0.21%
광물		6	0.24%	11	0.35%	8	0.26%	15	0.41%	9	0.19%
기타 제조품		2	0.08%	2	0.06%	6	0.20%	3	0.08%	3	0.06%
예술품·골동품		2	0.08%	2	0.06%	1	0.03%	1	0.03%	-	0%
시계, 녹음기		3	0.12%	2	0.06%	2	0.07%	13	0.36%	2	0.04%

* 자료 : WTO I-TIP, 품목분류가 중복 집계된 경우 있음

WTO회원국들이 외국의 위생·검역 관련 조치(SPS조치)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이의 사항인 특정무역협안(STC, Special Trade Concern)은 식품안전과 동물건강을 위주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SPS 관련하여 신규로 제기된 STC는 총 17건으로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제기 국가는 EU와 미국 등이고 대상 국가는 EU, 미국, 중국 등이다. 2005년부터 2019년 기간 최근 15년간 신규 SPS STC 제기국 상위 5개국은 EU와 미국이 90건으로 가장 많고 아르헨티나 45건, 브라질 37건, 중국 35건 등의 순이며 동일 기간 제기대상국은 EU가 93건, 미국 48건, 중국 32건, 일본 30건, 호주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연도별 신규제기 SPS STC 건수(최근 15년간)



자료 : WTO I-TIP

이의 제기 목적별로는 식품안전 및 동물건강 위주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2011년 이후 동물건강 목적과 식품안전 목적의 비중이 역전되고 있으며 성장 중인 우리나라 식품수출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 2019년 이후에는 전 분야에서 방역 강화와 인간 및 동·식물 질병 통제를 위한 특정무역현안 제기 증가가 예상 된다.

〈표 2-13〉 목적별 SPS STC 제기 현황(최근 15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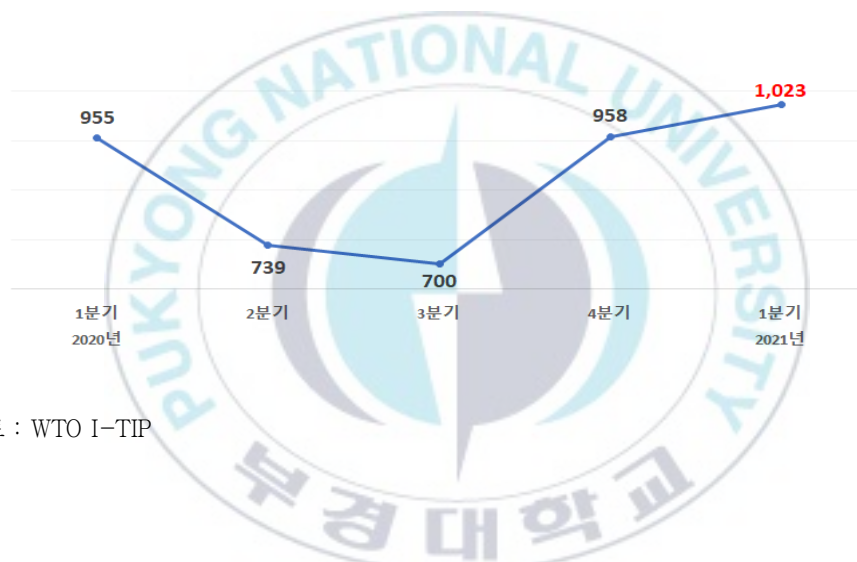
분야	연도	'05~'07		'08~'10		'11~'13		'14~'16		'17~'19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동물건강		25	42%	20	39%	21	38%	15	30%	17	32%
식품안전		13	23%	16	32%	22	39%	16	33%	20	39%
식물건강		15	28%	11	21%	11	18%	10	21%	9	19%
기타		4	7%	4	9%	2	4%	8	16%	6	10%
합계		57	100%	51	100%	56	100%	49	100%	52	100%

* 자료 : WTO I-TIP / 주 : 중복 집계된 경우 포함

3) 한국에 대한 최근 기술조치 동향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우리나라에 대한 TBT 통보문은 1,023건으로 전년 동기 955건 대비 7% 증가하였다. TBT 통보문 발행 추이를 보면 2005년 897건, 2015년 1,977건, 2018년 3,065건, 2020년 3,35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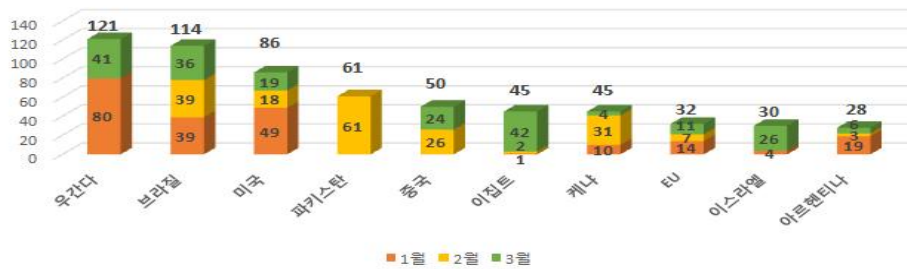
〈그림 2-8〉 분기별 최근 TBT 통보건 추이



자료 : WTO I-TIP

2021년 1분기 우리나라에 대한 TBT 통보문이 1,023건으로 전년 대비 급증한 이유는 전기·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분야에 대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중국과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전년 1분기 18건에서 2021년 1분기 50건, 파키스탄의 경우 전년 0건에서 2021년 1분기 6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국에 대한 TBT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중 개발도상국이 8개국으로, 최근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들이 전체 통보문 가운데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이들 국가들이 선진국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그림 2-9> 2021년 1분기 TBT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자료 : WTO I-TIP

우리나라 수출교역량의 85%를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가운데 미국 86건, 중국 50건, EU 32건으로 10대 수출국 전체 통보 건수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1분기 대비 중국(18건→50건)과, EU(29건→32건)의 통보건수가 증가하였다.

<그림 2-10> 2021년 1분기 10대 수출국 TBT 통보문 발행 현황



자료 : WTO I-TIP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 TBT 통보문과 관련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도 8건, 중국 5건, 사우디 4건, EU 3건, UAE·칠레 각 1건 등 17개국으로부터 제기된 33건의 TBT 통보사항이 우리 수출기업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별 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각국의 건강·보건분야 관심이 증가하여 식·의약품 37%, 생활용품 12%, 전기·전자 10%, 화학·세라믹 8% 순으로 2020년 1분기 대비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산업별 통보 비중을 보면 식·의약품 43%, 화학·세라믹 12%, 생활용품 10%, 전기·전자 7% 순이다.

〈표 2-14〉 산업별 TBT 통보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식의약품	아프리카(우간다, 이집트 등)와 중남미(브라질, 에콰도르 등) 국가에서 식품·의료기기 관련 기술규제 제·개정 사항을 통보
생활용품	아프리카(우간다, 탄자니아 등)와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국가에서 섬유소재 및 어린이용품 관련 기술규제 제·개정 사항을 통보
전기전자	아시아(터키, 파키스탄 등) 국가에서 가전제품 안전 규제 관련 기술규제 제·개정 사항을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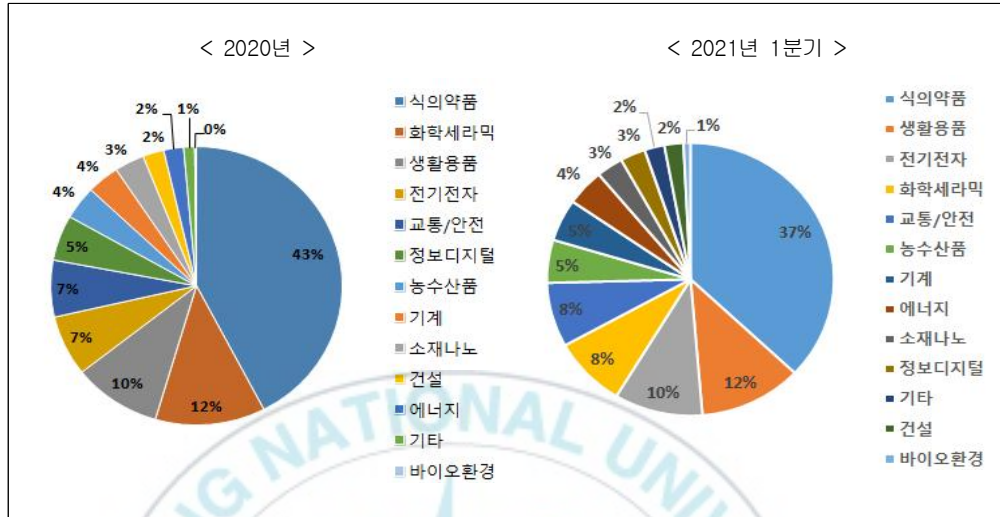
* 자료 : 산업통상부 자료 재인용

〈표 2-15〉 2021년 1분기 산업별 TBT 통보 누적 비중(건수/비중)

식의약품	생활용품	전기전자	화학세라믹	교통/안전	농수산물	기계	에너지	소재나노	정보디지털	기타	건설	바이오/환경	전체
379	119	102	85	78	52	51	44	31	29	23	22	8	1,023
37%	12%	10%	8%	8%	5%	5%	4%	3%	3%	2%	2%	1%	100%

* 자료 : 산업통상부 자료 재인용

<그림 2-11> 2000년 대비 2021년 1분기 산업별 TBT 통보비중(%)



* 자료 : 산업통상부 자료 재인용

4) 최근 한국의 TBT 대응현황

산업통상부는 2021년 1분기 TBT 통보문 1,023건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하고, 17개국의 33건(전기전자 16건, 식의약품 6건, 화학세라믹 5건, 교통안전 3건, 바이오 환경 2건, 생활용품 1건 등)에 대한 수출기업 애로를 파악하여 WTO TBT 위원회 및 FTA TBT 위원회 등을 통해 다자간, 양자간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유해화학물질 등 친환경 관련 규제 애로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개선·시행유예 등을 이끌어내어 1.7억불의 수출성과를 만들어냈다. 규제개선·시행유예를 이끌어낸 국가와 건수는 인도 6건, 사우디 1건, 아랍에미리트 1건, 칠레 1건, 짐바브웨 1건, 르완다 1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1분기 해외 기술규제 대응 및 성과 사례를 보면 A기업은 인도의 무수프탈산 제품의 수출에 대한 규제로 전면 중단될 위기였으나, 9개월 시

행연기로 인해 약 3,346만불의 수출이 가능해지고, 향후 규제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B기업은 인도의 에어컨 및 관련 부품인증 규제시행 연기와 인증대상 축소로 약 2,918만불의 수출이 가능해지고 인증비용이 경감되었다. C기업은 사우디 의류건조기의 소비전력 기준이 국제표준(IEC)과 맞게 개정하여, 국제표준에 맞게 생산된 다수의 건조기 제품이 사우디 시장진입에 가능해졌다. 22건의 미해결 의제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WTO TBT정례회의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해당국가의 현지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양자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제 3 장 신기후체제의 무역규제와 무역협정간의 비교검토

제 1 절 신기후체제의 무역규제 분석

1. 국제 기후 변화 정책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글로벌 문제이다. 따라서 글로벌 대책이 개별 국가가 대응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공평하며 효율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례 협상을 주최하였다. 협상자들은 1997년 교토 의정서를 통해 일부 당사자들로부터 구속력 있는 약속에 도달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배출국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은 실패했다. 협상은 2009년 코펜하겐, 2010년 칸쿤, 2011년 더반, 2012년 도하, 2013년 바르샤바에서 열렸으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¹⁸⁾. 필요한 배출량 감축의 성격과 규모, 국가 간 배출량 감축 할당, 청정에너지 배치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과 같은 문제에 대한 협상이 어려움을 겪었다. 구속력이 있는 국제 기후변화 규정의 부재는 기후정책을 국가적 수준으로 몰아가고, 국제 무역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

국내 환경 규제와 국제 무역 시스템 간의 갈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71년 GATT 사무국은 한 국가가 공유한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1982년 UN 총회는 유해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18) Fiona Harvey, *Warsaw Climate Talks Set 2015 Target for Plans to Curb Emissions*, THE GUARDIAN (London), Nov. 24, 2013,

제품 표준의 채택을 장려하는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을 승인했다. 10년 후인 1992년 UN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오 회의에서는 환경 규제 및 국제무역에 대한 세 가지 일반원칙을 수립했다. 첫째, 국경을 초월한 문제에 대응하는 국내 환경 규제는 국제 협약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둘째, 그러한 국경을 초월한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피해야 한다. 셋째, 일방적인 조치가 무역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면 안된다¹⁹⁾. 이러한 세 가지 일반원칙은 무역규칙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의 국제무역 체제는 환경 규제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

국내 상품과 해외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내 규제를 구성하는 제품 표준 조차도 국제무역 분쟁을 촉발한다. 공유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국내 정책을 처음으로 지지한지 20년이 지난 1991년 GATT 사무국은 "원칙적으로 GATT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시장 접근은 수출국의 국내 환경정책이나 관행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다." 고 발표했다²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GATT 사무국의 최근 입장을 따르고 있으며, 한 국가의 정치적 의제가 다른 국가에 부적절하게 부과되는 무역 규제로서의 제품 표준 사용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분석가들은 무역 규제를 통한 제품 표준의 부과가 개발도상국의 신흥 기업에 불균형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환경 규제 및 무역 규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많은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주도 국가들의 행동과 의지는 더 넓은 합의와 다자간 조약 체결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²¹⁾. 예

19)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Change, Paris ClimateChange Conference, November 2015, http://unfccc.int/meetings/paris_nov_2015/meeting/8926.php(noting the parties reached an actual agreement as to how best to implement the goals of the aforementioned 15th COP). For an overview of the new regime, see Susanne Droge, The Paris Agreement 2015: Turning Point for the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Feb. 2016).

20) Paris Agreement, Dec. 12, 2015, 2016 T.I.A.S. No. 16-1104 [hereinafter Paris Agreement], <https://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66403.pdf>.

21) In 2015, parties to the UNFCCC submitted their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를 들어, 2012년 멕시코 입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소 수준보다 30% 낮추고 2024년까지 전력의 35%를 재생 가능 자원에서 생산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승인했다. 또한, 호주, 중국, 한국은 최근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장려하거나 요구하는 국내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정책 중 상당수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상당한 배출량 감소의무에 따른 경제적 혹은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싶지 않은 반대 국가의 무임승차를 촉진시킬 수 있다. 적극적인 국가의 조치는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에 가입하거나 국내 배출량 감축 계획을 통과하기를 거부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치명적인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일 것이다. 무임승차의 위험과 국내 기후변화 규제의 패치워크 특성에 관계없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진전의 대부분은 이제 국제적 수준이 아닌 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미국 기후변화 정책

미국의 국내 기후변화 협상이 유엔만큼 복잡하고 느리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회와 행정부 모두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다양한 정책 대안의 고려를 거부했다²²⁾. 미국 대법원은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가스 배출이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른 오염물질임을 인정했으며,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 품질 표준을 공표하도록 허용했다. DC Circuit은 2012년 Coalition for Responsible Regulation, Inc. v.

contributions (INDCs), which must be updated and turned into NDCs under the Paris Agreement.

22)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Oct. 30, 1947, 61 Stat. A-11, 55 U.N.T.S. 194 [hereinafter GATT]. Article 3.5 of the UNFCCC (1992) states climate policy measures should not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EPA에서 이러한 규칙을 지지했다.

이러한 잠정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후변화 규제는 여전히 파편화되고 불확실하다.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외국 경쟁업체에 적용되지 않는 또 다른 환경 규제의 대상이 되는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경제적 위협으로 인해 포괄적인 기후변화 규제 지원을 꺼린다. 미국에서 강력한 국가 배출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법률은 국제 환경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엄청난 양의 세계 무역에 관여하고 있으며(2021년 3조 3천 900억 달러 수입, 2조 5천 300억 달러 수출) 국내 기후변화 규정은 미국 시장에서 수출되거나 미국 시장으로 판매되는 두 상품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의미 있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정책은 상당한 양의 세계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발전시키면 미국과 글로벌 배출 감소를 지원하는 무역파트너 간의 친선이 증가할 수 있다. 탄소 집약도 표준이 의미 있는 진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환경에 놓여있다.

3. 탄소 집약도 표준

탄소 집약도 표준은 제조 지역에 관계없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배출 감소를 달성하기 때문에 다른 정책 대안과 구별된다. 이 정책은 수입 및 국내생산의 특정 제품에 대해 최대 탄소 집약도를 설정하므로 미국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국내·외 모든 제조업체는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최대 탄소 집약도를 준수해야 한다. 탄소 집약도 표준은 배출 감소에 대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시장 메커니즘이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장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후변화 규제에 대한 더 큰 국제적 합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 표준은 구속력 있는 국제 기후 조약에 필요한 전 세계적인 합의를 요구하지 않고 탄

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의 실제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탄소 집약도 표준은 미래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배출 감소를 요구함으로써 배출 감소와 무역 자유화 증가를 결합할 것이다. 무역 자유화가 계속됨에 따라 상품 수입이 증가하고 탄소 집약도 기준이 더 많은 상품에 적용될 것이다.

또한, 탄소 집약도 표준은 구속력 있는 조약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동의하지 않는 완고한 국가의 무임승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수출은 주요 수입국의 탄소 집약도 요구 사항에 직면하여 해당 국가의 제조업체가 탄소 집약도 표준이 있는 국가의 국내 제조업체와 다른 입장에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소홀히 하고 경쟁하는 것을 방지한다²³⁾. 그러나 유효한 국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정책이 국제무역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무역 규제 프레임워크는 회원국의 관련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제정 능력을 제한한다²⁴⁾. GATT와 TBT 후속협정 등은 국내 규제와 국제 무역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 2 절 신기후정책과 무역조항의 쟁점

1. GATT협정관련 쟁점

WTO의 무역 규정은 투명성, 예측 가능성, 안정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WTO 무역규칙의 목적은 WTO 회원국들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WTO 회원국들 간의 무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GATT의 제1조는

23)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sixteenth session, held in Cancun from 29 November to 10 December 2010, U.N. DOC. FCCC/CP/2010/7/Add.1 (Mar. 15, 2011).

24) UNFCCC, supra note 3, at art. 4; Paris Agreement, supra note 16, at art. 4.15; Ralph Bodle et al., The Paris Agreement: Analysis, Assessment and Outlook, GERMAN FED. ENV'T AGENCY 20 (2016); Chan, supra note 27, at 228-37.

쌍무회담을 위한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MFN) 원칙을 설정하는데, 한 회원국이 무역파트너와 더 낮은 관세에 동의한다면, WTO 회원국들 간의 차별을 피하고 특정한 정당성을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자동적으로 동일 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비차별이 핵심이며 이는 GATT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수입 제품을 "유사한(like)" 국내생산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GATT 제2조 2(a)항은 WTO 회원국이 해당 회원국이 국내산 동종 제품에 부과한 내국세에 상당하는 수입 제품 또는 수입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생산한 제품에 대해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경세 조정은 국가적인 대우 요건을 준수하여 수입품이 국산 제품과 비교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WTO 회원국들, 무역 상품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된 "유사한" 상품들 사이의 차별 없는 대우는 기후정책 결정에 어려움을 제기한다. 아직 제대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WTO 체제에서 이해되는 제품의 "유사함(likeness)"은 기후정책 조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해결하는 핵심 요소이다²⁵⁾. 온실가스 배출은 종종 생산 공정의 일부이며 거래되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 즉, 제품과 관련되지 않은 공정 및 생산 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에서는 찾을 수 없다. 제품과 관련되지 않은 PPM(예: "내재 탄소")을 기반으로 한 수입 또는 수출의 차별화는 국경에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WTO 규칙에 따라서는 정당화되어야 한다²⁶⁾. 수입 상품에 적용되는 국경 탄소 조정 또는 탄소세의 합법성이 주로 이 특정 지점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GATT의 6조 및 16조는 GATT/WTO 시스템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CVD)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공하는 반면,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SCM)은 이

25) Pauwelyn, U.S. Federal Climate Policy and Competitiveness Concerns, *supra* note 72; Pauwelyn, Carbon Leakage Measures, *supra* note 72

26) Pauwelyn, U.S. Federal Climate Policy and Competitiveness Concerns, *supra* note 72; Pauwelyn, Carbon Leakage Measures, *supra* note 72.

행에 관한 협정이다. 제16조는 1차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거나 다른 제품의 수출 가격을 국내 시장의 가격 보다 낮추는 보조금에 대한 일반 조항을 포함한다. 제6조는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부여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상계관세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으로 인한 국내 동일산업에 대한 성장의 저해나 상해 또는 피해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GATT 제20조에는 GATT 규칙에 대한 예외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차별금지가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중 두 가지는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다. 차별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차별적 조치가 국내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제한을 통해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에 효과적일 경우에 차별이 허용된다. 차별금지의 모든 예외사항은 제20조의 두문(chapeau)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무역 제한조치가 아님을 검증받아야 한다. UNFCCC 및 교토의정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제20조는 순전히 무역 중심적인 열망이 아닌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책 조치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국제무역 체제에서 기후정책 조치를 정당화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의 핵심 조항이다.

2. WTO 기타 협정관련 쟁점

GATT 외에도, WTO에 따른 또 다른 여러 협정은 상품 또는 서비스무역의 특정 측면을 규제하기 때문에 기후와 무역 정책 사이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이러한 7가지 가장 중요한 협정을 차례로 살펴보고 기후정책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 논의한다.

1)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적인 협약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제1조에 따르면, 본 협약은 "정부 권한 행사 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는 모든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들의 조치"에 적용되며, 서비스무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까지 확대된다²⁷⁾.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GATS의 양허에 대한 접근 방식은 양허표(Schedules of Commitments)와 같은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을 적용한다. 즉, 개별 회원국이 MFN 원칙을 적용하여 자유화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위기 완화 및 적응을 위해 채택된 정책 중 회원국의 양허표에 포함된 부문 또는 하위 부문에 속하는 서비스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 경우 GATS에 따라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후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시장의 크기는 관련 상품 시장을 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여러 섹터로 분산되기 때문에 기존 명명법에 따라 식별 및 분류가 어렵다. 또한, 에너지나 청정 기술과 관련된 서비스는 해당 상품과 함께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품협상과 서비스협상 간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부족한 경우가 많다.

WTO의 환경 서비스협상과 그 분류는 서비스무역 위원회 특별 회의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조치는 개별 회원들의 양허표에 나열된 기존 부문 및 하위 부문의 서비스를 가정하여 사례별로 평가된다. GATS 하에서의 무역 자유화와 함께 환경서비스협상의 느린 진행은 서비스 무역협정과 같은 지역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에 관한 협상 의제로 옮겨가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기후 관련 서비스와 관련한 논의결과는 더 큰 규범적 균열과 지리적 대립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27)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 Complaint by Guatemala and Honduras, WTO Doc. WT/DS27/R/GTM, WT/DS27/R/HND (May 22, 1997) (affirmed GATS applies to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trade)

2)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대한 합의

특정 투자 조치가 무역에 제한적이고 왜곡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무역 관련 투자 조치(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에 관한 WTO 협정 제2.1조에 있는 GATT 1994의 제3조(내국민대우) 또는 제11조(양적 제한의 일반적 철폐)와 일치하지 않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의 사용을 금지하고있다²⁸⁾. 본 협약은 상품 무역과 관련된 투자 조치에만 적용되며 서비스무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적용 범위는 WTO 규정으로 제한된다. "무역 관련 투자 조치"라는 용어는 협약서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협정 부속서에 GATT 1994의 제3.4조 또는 제6.1조와 일치하지 않는 예시적인 조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목록에 포함된 예시조치로는 상품 생산을 위한 현지 부품 함량 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s, LCR), 무역 균형 요건(예: 수입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수량 또는 기업이 수출한 제품의 가치), 교환 균형 요구 사항(예: 기업으로의 외환 유입과 관련된 금액으로 외환에 대한 접근 제한), 수출 제한 등이 있다.

TRIMS 협정은 다양한 WTO 회원국들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LCR에 관한 사례가 지배적인 기후 관련 분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WTO 협정 중 하나이다. 국내 규정의 투명성과 새로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비차별에 대한 TRIMS 요건은 국가결정기여(NDCs)의 일부인 국가 고용 및 산업정책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파트너들은 수입업자들을 차별하는 국가 규정에 계속해서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합의

28) David A. Ganz & Padideh Ala'i, ClimateChange Innovation, Products and Services Under the GATT/WTO System, in RESEARCH HANDBOOK ON INTELLECTUAL PROP. AND CLIMATECHANGE 271, 290 (J. D. Sarnoff ed., 2016)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은 거래된 제품과 관련된, 예를 들어 위조될 수 있는 제품의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TRIPs는 WTO 회원국의 국내 지적재산법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제공한다. TRIPs 협정 이전에는 엄격한 분쟁 해결의 부족으로 인해 IPR에 대한 국제적 강제성이 거의 없었다²⁹⁾. TRIPs 협정에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 디자인, 특허(식물 다양성 보호 포함), 통합 회로의 배치 설계(주제), 영업비밀 및 테스트 데이터를 포함한 미공개 정보 보호가 포함된다.

IPR은 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이전과 확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TRIPs 협정의 목적은 IPR 보호가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협정의 "원칙"은 회원국의 TRIPs 협정 채택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는 공공 보건과 영양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부문에 대한 공익적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TRIPs 협정의 일관된 조치는 권리 소유자의 IPR 남용 또는 "무리하게 무역을 억제하거나 기술의 국제 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될 수 있다. 현재 TRIPs 협정은 20년간 특허를 보호한다. 암묵적 노하우를 포함한 영업비밀은 협정에 의해 보호되며, 회원은 비밀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TRIPs 협정 제66.2조는 선진국이 후진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기업 및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협정에서는 회원이 비자발적 또는 강제적 라이선스 또는 특허 기술에 대한 정부 사용 허가, 비상업적 연구에 대한 제한적 예외 등 협정에 내재된 특정 "유연성"을 활용한 조치

29) Peter K. Yu,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and Global ClimateChange, inRESEARCH HANDBOOK ON INTELLECTUAL PROP. AND CLIMATECHANGE (J. D. Sarnoff ed., 2016).

를 취할 수 있다. 2001년 TRIPS 협정 및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각 회원국은 강제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와 그러한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근거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 TRIPS 협정 제64조는 IPR에 관한 분쟁은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의 3부에서는 무역 관련 조치를 사용하여 IPR 보호를 시행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을 설명하지만, 국제 IPR 문제의 매우 역동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IPR의 적용을 위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환경친화적이고 기후 친화적인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접근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활동의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 TRIPS 협정은 기후 친화적 기술 개발자의 입지를 강화하면서도 기술 이전을 통한 보다 나은 확산보급을 요구한다. 이러한 입장은 최소한의 연구 개발 비용의 보장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국가에 혁신적인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데 특히 중요하다. MFN 조항은 선택된 국가들에 대한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특정한 조치들이 모든 WTO 회원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증한다. 그러나 TRIPS 협정의 역할은 기술이전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고려할 때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TRIPS 협정은 무역 조치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략적인 지침만 제공할 뿐 조치의 시행은 보다 정확한 공통 기준을 기반으로 해야한다.

4)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대한 합의

SCM 협정은 보조금의 정의와 상계관세에 대한 명확한 규율을 제공함으로써 GATT 16조의 정확성을 더해준다. 그것은 WTO 회원국의 보조금 사용을 제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무역파트너의 보조금에 대한 조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이 국내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판명되면 국가는 자체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SCM 협정 제1.1조에 보조금을 정의

하고 있다. GATT 제16조에는, 모든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 지원을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식별은 나열된 이전 옵션을 통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유지된다. 핵심 개념은 "특정" 보조금에 초점을 맞춘다. 특정 보조금은 보조 국가의 기업, 산업, 기업 그룹 또는 산업 그룹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SCM 협정은 국내 또는 수출 보조금일 수 있는 이러한 특정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금지 및 실행 가능한 두 가지 범주가 정의되어 있다. 금지된 보조금은 수출 실적 또는 수입 품목에 대한 국내 사용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 재정기여금의 이전, 구체화, 이익의 배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조금은 실행 가능하나 보조금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다.

정부가 보호주의적인 방식으로 국내 생산자를 지원하거나 국경에서 연료 가격을 차별화하는 국내 기후정책 설계는 SCM 협정에 위배 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되는 국산품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WTO 분쟁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SCM 협정은 많은 WTO 회원국들의 화석연료에 대한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은 규율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을 촉진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에 대한 긴급한 요구를 고려할 때, WTO는 정보 허브 역할을 하고 SCM 규정을 통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보조금 협정에 대한 추가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5) 반덤핑 협정

반덤핑 협정은 GATT 제6조를 명확히 하고 확대하며 WTO 회원국들이 각각의 반덤핑법과 관행을 준수하도록 규정을 제공한다. 회원국들은 경쟁적인 국내 산업에 물질적인 진정한 피해가 있는 경우 덤핑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원

국은 "덤핑이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덤핑의 정도(수출자의 국내시장가격에 비해 수출 가격이 얼마나 낮은지)를 계산하고, 덤핑이 피해를 입히거나 그렇게 할 위험이 확인되면 특정 수출국의 특정 제품에 대해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정상 가치'에 가깝게 하거나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

반덤핑 조치는 기후 관련 제품, 특히 재생에너지 제품의 맥락에서 WTO 회원국들에 의해 사용되어왔다. 태양전지 및 패널 시장이 급성장하고 중국 생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유럽 태양광 산업의 선두 주자들은 국제무역과 전문화의 역동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3년, 유럽연합은 태양 전지판의 EU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2년간의 반덤핑과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만약 기후정책이 태양 전지판의 예를 따라 더 많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낸다면, 기후와 관련된 상품 시장의 미래 역학관계는 국내 산업정책 전략이 무역규칙과 충돌하기 때문에 더 많은 반덤핑 의혹을 일으킬 수 있다.

6) 정부 조달에 관한 합의

정부조달 협정은 투명성, 청렴성 및 정부 지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PA는 WTO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몇 안 되는 다자간 협정 중 하나로 부상했다. GPA는 쌍방 또는 지역 무역협정의 조달 조항이 그 구조에 따라 모델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구매는 탄소 발자국이 적은 저공해 운송 수단이나 재료와 같은 기후 친화적인 상품에 대한 수요를 확립하는 핵심 수단이다. 특히, 야심 찬 기후정책을 가진 국가는 종종 공개 입찰 절차에 "녹색" 기준을 포함한다. 이는 기준에 제품과 관련되지 않은 PPM이 포함되는 경우 수입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GPA의 2012 개정판은 지속 가능한 조달의 처리에 대한 새로운 작업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작업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조달의 목표, 국가 및 하위 국가 정책에 통합되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조달이 "가격 대비 최고의 가치" 원칙과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다룬다.

3. 지역무역협정관련 쟁점

기후-무역 간의 상호 관련 규칙은 RTA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세 가지 유형의 환경 및 기후 조항이 존재³⁰⁾하는데 첫 번째 유형은 기후변화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환경 조항이다. 여기에는 환경에 대한 언급, 기후변화 해결과 관련된 특정 원칙(예: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당사자들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조항 또는 당사자들에게 환경보호를 유지, 개선 및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또한, 다자간 환경협정에 대한 언급이 명시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RTA와 그러한 협정 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모든 참조가 기후 조약(UNFCCC,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환경 조항에는 GATT의 20조의 예외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RTA는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과 같은 다른 이슈 분야로 예외를 확대했다.

두 번째 유형은 기후 관련 부문에 대한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거나 촉진하는 것을 분명히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특히 기후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 자유화를 장려하는 조항,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조항(예: 표준의 조화를 통한) 및 에너지 보조금을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여러 RTA에는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포함하여 환경 재화와 서비스의 무역을 자유화하려는 당사자들의 의도를 설명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30) Markus W. Gehring et al., Climate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An Overview, INT'L CTR. FOR TRADE & SUSTAINABLE DEV., ISSUE PAPER NO. 3 (Aug. 2013), <http://www.ictsd.org/downloads/2013/08/climate-change-and-sustainable-energy-measures-in-regional-trade-agreements-rtas.pdf>.

EU-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13조 11.2항은 기후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두 번째 유형의 최근 협정 사례이다. 또한, 협정의 제 7.4조(a)는 특정 당사자가 "상대의 제품, 서비스 공급업체, 투자자, 또는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콘텐츠 요건 또는 기타 상계에 대한 조치의 채택을 금지할 것"으로 지정된 재생에너지 생산 및 투자에 대한 비관세장벽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동일 협정에는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인한 무역 왜곡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고, 제13조 11.3항에 포함된 "당사자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목표를 공유한다고 명시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여러 RTA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협정 당사국 간의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항에는 기후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기후 조약에 따른 기존 약속을 재확인하는 일반적인 약속이 포함된다. 또한, 적응, 탄소 시장, 기술, 산림 및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특정 문제에 대한 조항이 존재한다. 권한위임과 가장 중요한 관련 당사자의 예산 할당에 따라 이러한 조항은 후속 기술 협력, 정보 교환 및 역량 구축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으며 UNFCCC의 규정을 넘어설 수도 있다.

4.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쟁점

탄소 집약도 표준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직접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 기준은 GATT 및 TBT 협정에 따라 수입품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거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생성해서는 안 된다. 최근 학계와 실무자들은 GATT 및 TBT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국내 탄소 집약도 표준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³¹⁾. 이러한 표준은 탄소 집약도를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 특

31) See Verrill, *supra* note 4, at 48-51; Andrew Greene, Carbon Intensity Standards: A Distraction and A Danger to Real Action on Climate Change, 15 HASTINGS W.-N.W. J. ENVTL. L. & POL'Y 91, 119-23 (2009).

성"으로 규제하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³²⁾. 그러나 WTO는 TBT협정 제12조(3)의 요건을 국내 규정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WTO의 구체적인 요건은 알 수 없다. 2010년 4월, 인도네시아는 TBT협정 제12조(3)에 따라 국내 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고, 이 분쟁으로 인해 WTO는 이 조항의 범위를 다루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TBT협정 제12조(3)에 따라 개발도상국 파트너로서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정향담배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의를 요청했다³³⁾. 협의가 이견을 해결하지 못한 후, WTO 분쟁 해결기구는 불만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패널을 구성했다. 패널은 2011년 6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정향담배 제한이 TBT협정 제12조(3)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³⁴⁾. U.S.-Cigarettes 사건의 패널은 “특별 개발, 재정 및 개발도상회원국의 무역수요”를 명시하고 TBT협정 제12조(3)에 따라 의무 위반에 대한 세 부분으로 구성된 논의의 틀을 설정했다. 해당 조항에 명시된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세 가지 요소가 입증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TBT협정 제12조(3)의 문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가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패널은 제시했다.

- (a) 인도네시아 개도국 지위
- (b) 인도네시아의 특별 개발, 재정 및 무역 요구 사항
- (c)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특별한 금융, 개발 및 무역 요구 미 고려

첫째와 두 번째는 직접적인 사실 조사다. 한 국가는 World Bank 또는 WTO

32) Verrill, supra note 4, at 46. As of 2008, there were no suitable international standards or equivalent standards in other countries that the U.S. could adopt in its regulation of carbon intensity. See id. at 50.

33) U.S.-Cigarettes, supra note 6, 1.1. Indonesia challenged the U.S. regulation on multiple grounds under the 1994 GATT and TBT Agreement, but the claim under TBT article 12(3) is the relevant claim to this analysis. Id. 3.1.

34) Id. 8.1. The U.S. appealed certain aspects of the Panel report, but Indonesia did not appeal the Panel's finding on TBT article 12(3). Because Indonesia did not appeal the finding, the Appellate Body did not discuss the issue and the 2011 Panel Report remains the only formal WTO interpretation of article 12(3)

의 그러한 지위에 대한 사전 승인을 참조하여 개발도상국임을 입증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는 규제가 주요 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수출 또는 경제의 물질적 부분 규제 국가가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세 번째 부분은 훨씬 더 모호하다. 패널은 세 번째 부분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SPS협정) 제10조(1)과 TBT협정 제12조(3)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했다. U.S.-Cigarettes 분쟁 패널은 생명공학 분쟁에서 명시한 SPS협정 제10조(1)의 이전 WTO 분석을 참조했다. 그들이 참조한 EC-Biotech 분쟁 패널의 견해는 SPS협정 제10조(1)에 규정된 의무는 수입회원국이 개발도상회원국의 필요를 "고려" 하는 것이다. 사전에는 '고려하다'라는 표현을 '다른 요인과 함께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SPS협정 제10조(1)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결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어떤 조치가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감소시키거나 증가를 더디게 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 수입회원국이 항상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³⁵⁾.

U.S.-Cigarettes 분쟁 패널은 이 견해를 채택했으며 한 국가가 개발 중인 무역파트너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TBT협정 제12조(3)의 요구 사항은 해당 국가가 무역파트너가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뿐³⁶⁾ 규제 국가가 개발 파트너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불만에 대응하여 정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³⁷⁾고 해석했다. U.S.-Cigarettes 분쟁 패널이 TBT협정 제12조(3)에 대한 해석을 발표한 직후, U.S.-COOL 분쟁 패널은 유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U.S.-COOL 분쟁 패널은 TBT협정 제12조(3)의 첫 번째 문구인 "구성원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에 따라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35)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690, WT/DS293/R (Sept. 29, 2006) [hereinafter EC-Biotech]

36) See U.S.-Cigarettes, supra note 6, at 7.645.

37) See U.S.-Cigarettes, supra note 6, at 7.646.

발견했다³⁸⁾. 또한, EC-Biotech 분쟁 패널의 견해를 인용하여 규제 국가가 개발도상국 교역 파트너의 요구에 접근 방식을 채택할 필요 없이 "고려"만 필요하다고 해석했다³⁹⁾. 이러한 해석과 함께 U.S.-COOL 분쟁 패널은 “그러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수출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TBT협정 제12조(3)의 마지막 문구는 새로운 법적 의무를 생성하거나 기존 의무의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오히려 조항의 맥락과 목적을 명확히 제공한다고 했다⁴⁰⁾.



38) U.S.-COOL, supra note 6, at 7.762.

39) U.S.-COOL, supra note 6, at 7.781.

40) U.S.-COOL, supra note 6, at 7.762.

제 3 절 기후협정과 무역조항의 역할 검토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체제는 국가적 조치의 조정, 검토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조정을 통해 발전한다. 기후정책 결정(예: 목표, 일정, 조치)은 당분간 파리협정 당사자에게 맡겨야 하며, 합의서에는 향후 정기적으로 NDC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한 많은 이슈들 중에서, 시장 및 비시장 메커니즘의 설계, 재정, 기술 이전, 그리고 NDC의 검토와 조정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협력이 계획되어 있다⁴¹⁾. 그러나, 항공과 해상 운송의 국제 규제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합의되지 않았다. 이번 절에서는 먼저 파리협정 체제의 지원을 받는 국제 기후 행동(항공 및 해상 운송에 대한 협력적 접근, 기술 이전 및 부문별 정책에 중점)을 살펴본 다음 국가 기후정책 조치(주로 탄소 가격 책정 및 보조금), 기후 보호 촉진에 있어 무역규칙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협력적 접근

교토의정서는 국제 배출권 거래, 청정 개발 메커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및 공동 이행(Joint Implementation, JI)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기반의 유연한 메커니즘을 도입했다⁴²⁾. 파리협정은 자발적인 기반 위에서 그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의 설계 및 구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CDM의 미래, 새로운 메커니즘과 2020년 시작된 UNFCCC에 따른 아직 정의되지 않은 배출권 검증 및 거래 관련 미래 규칙에 대한 불확실성이

41) See Paris Agreement, *supra* note 16, at arts. 4, 6, 9 & 10.

42) Kyoto Protocol, *supra* note 6, at arts. 6, 12 & 17.

존재한다. 현재까지 제출된 모든 자발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의 약 절반이 국제 탄소 시장에 대한 접근을 조건으로 한다⁴³⁾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기후 협상에서 시장 개념을 둘러싼 정치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탄소 가격 책정과 같은 도구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⁴⁴⁾.

파리협정 제6조는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자발적인 협력적 접근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명시하고 있는데⁴⁵⁾, 이 중 두 가지는 국가 관할권 전반에 걸쳐 탄소 단위 시장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미래의 기후-무역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 그러한 접근법은 파리협정에 따라 개발된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내 또는 지역 시장 구조에 기초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의 유연한 메커니즘(예: 국제 배출권 거래, CDM, JI)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있지 않다. 제 6.1조는 단지 자발적인 협력적 접근 방식을 NDC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유형의 정책 도구는 이 선언적 조항에 해당 될 수 있다⁴⁶⁾. 6.2조 및 6.3조에서는 협력적 접근법이 국제적으로 이전된 배출가스 완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⁷⁾. 환경 무결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강력한 회계, 이중 계수 회피와 같은 일부 기본원칙은 6.1과 6.2조에 명시되어 있다⁴⁸⁾. 관련 지침은 파리협정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에서

43) Environmental Defense Fund &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Carbon Pricing: The Paris Agreement's Key Ingredient, INT'L EMISSIONS TRADING ASS'N, 1, 4 (2016), http://www.ieta.org/resources/Resources/Reports/Carbon_Pricing_The_Paris_Agreements_Key_Ingredient.pdf.

44)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wenty-first session, held in Paris from 30 November to 13 December 2015, supra note 30, at 136.

45) Paris Agreement, supra note 16, at art. 6.

46) Paris Agreement, supra note 16, at art. 6.1

47) Paris Agreement, supra note 16, at art. 6.2, 6.3

48) Paris Agreement, supra note 16, at art. 6.1, 6.2

채택된다. 이러한 지침은 회계나 투명성과 관련된 중요한 틀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탄소 단위의 특성 및 엄격성에 대한 중요한 물성 기준은 개별 국가 수준에서 정의될 것으로 예상된다⁴⁹⁾.

제6.4조는 온실가스 배출 완화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메커니즘(일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메커니즘"으로 표시)을 확립한다⁵⁰⁾. 지난 협상 과정을 통해 이 메커니즘이 교토의정서에 따른 CDM과 같은 기준 및 신용 시스템과 유사함을 나타낸다⁵¹⁾. 협력적 접근법의 광범위한 범위(즉, 파리협정 6.2조 및 6.3조)와는 달리, 지속 가능한 개발 메커니즘의 운영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감독하는 CMA의 물질적, 절차적 통제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제6조는 배출권 거래를 이용하고 행동과 규칙을 조정하거나 심지어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을 고려하는 국가들 간의 특정 연합을 위한 길을 열어준다.

국제 무역에서의 배출권은 WTO나 RTA 규정에 따라 발전한 관심 분야가 아니라, 교토의정서와 UNFCCC에 따른 후속 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배출권이 GATT에 따른 상품 또는 GATS에 따른 서비스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둘 다 아니라고 결론짓는다⁵²⁾.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입업체 또는 무료 할당 규칙과 같은 국가 또는 초국가적 배출권거래제도의 규제가 어떻게 무역규칙을 위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분석을 이용할 수

49) See Christof Arens ed., The Dawning of a New Era: Paris Climate Summit Agrees on Substantive Package of Market Mechanisms, CARBON MECHANISMS REV., Issue 1 (2016).

50) Paris Agreement, supra note 16, at art. 6.4.

51) See See Andrei Marcu, CTR. FOR EUR. POL'Y STUD., Carbon Market Provisions in the Paris Agreement, 1, 13 (2016), <http://www.ceps-ech.eu/sites/default/files/SR%20No%CC20128%CC20ACM%CC20Post%CC20COP21%CC20Analysis%CC20of%CC20Article%206.pdf>.

52) See, e.g., Joseph E. Aldy et al., Beyond Kyoto: Advancing the International Effort Against Climate Change PEW CTR. ON GLOBAL CLIMATE CHANGE (2003); N. Keohane, A. Peterson & A. Hanafi, Toward a club of carbon markets, CLIMATIC CHANGE (2015); Annie Peterson, The Kyoto Protocol and the WTO: Integr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llowance Trading into the Global Marketplace, 10 DUKE ENV'T L. & POL'Y F. 185 (1999); Jacob Werksman,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and the WTO, 8 REV. OF EUR., COMP. & INT'L ENVTL. L. (1999).

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상쇄 크레딧 또는 에너지 시장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인증서와 같이 거래 가능한 다양한 기후 관련 단위에 대한 시장의 맥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GATS에 해당한다는 데 더 큰 합의가 있다⁵³⁾. 이러한 시장은 중개자 수(예: 은행, 브로커, 거래소, 보험, 프로젝트 개발자, 데이터 공급자 및 검증자)의 증가를 포함하여 강력한 성장을 보여 왔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GATS, 특히 금융 서비스에 관한 부록에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⁵⁴⁾. 민간 부문에 의해 주도된 일부 1차 시장은 파생 상품에 대한 2차 시장도 생겨났으며, 이는 명백히 금융 서비스에 관한 부록의 범위에 속한다. 개별 협정의 일정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의 회원국은 MFN, 시장 접근 및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차별금지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⁵⁵⁾.

배출권 거래 제도 또는 탄소 국경조정제도가 WTO 회원국을 차별하는 규정으로 등장할 경우⁵⁶⁾, 예를 들어, 각 배출권 거래 계획의 강도에 따라 비 당사국 또는 당사국과의 무역을 배제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리적 발생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에서 특정 교토의정서 단위의 제한된 대체 가능성의 경우 이미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⁵⁷⁾. 이러한 문

53) See James Munro, Trade in Carbon Units as a Financial Service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Recent Developments, Future Challenges, 8 CARBON & CLIMATE L. REV. 106, 107 (2014); Marisa Martin, Trade Law Implications of Restricting Participation in the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19 GEO. INT'L ENVTL. L. REV. 437 (2007); Glenn M. Wiser,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Versu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Can Free-Market Greenhouse Gas Emissions Abatement Survive Free Trade?, 11 GEO. INT'L ENVTL. L. REV. 531 (1999).

54) See James Munro, supra note 165 (providing an overview of the continuing debate).

55) Over 100 members have entered commitments on financial services and many apply an optional 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 annexed to the 1997 Financial Services Agreement, which became the GATS Annex on Financial Services. See generally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WORLD BANK, I-TIP Services, <http://itip.wto.org/services/default.aspx> (last visited Apr. 11, 2017) (providing a database of Members' commitments under GATS and other trade agreements).

56) See generally CARBON PRICING LEADERSHIP COAL., Leadership Coalition, <http://www.carbonpricingleadership.org/leadership-coalition> (last visited Apr. 11, 2017) (explaining the agenda of the coalition).

57)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제가 발생할 경우 참여 회원국이 누리는 혜택을 비회원국일 경우 배제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합의에 의한 근거를 전제로 하는 경우 이러한 협력적 접근은 무역체제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⁵⁸⁾.

2. 기후 친화적 기술의 이전

기술 이전의 필요성은 UNFCCC(제4.5조)와 파리협정(제10조)에서 인정되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해야 하는 이행 수단(예: 재정, 기술 및 역량 구축)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협정은 기후 친화적인 기술의 이전이나 IPR의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⁵⁹⁾. 이러한 내용들은 파리협정 및 WTO(TRIPS 협정 포함)의 지원에 따른 추가 협상에서 다루어진다. 비록 2010년 칸쿤에서 열린 UNFCCC 회의에서 기술 메커니즘이 확립되었지만, IPR의 까다로운 문제는 여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술의 개념화, 이전 과정, 강력한 지적 재산권 보호의 영향에 대해 UNFCCC의 당사자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 불일치가 존재한다. 강력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IPR이 계약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기술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2003 O.J. (L 275) 32. See generally Environmental Defense Fund &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supra* note 152, at 5-6 (interpreting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Christina Voigt, *WTO Law and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Is there Potential for Conflict?*, 1 CARBON & CLIMATE L. REV. 54 (2008) (providing an analysis under the Kyoto Protocol).

58) See generally William Nordhaus, *Climate Clubs: Overcoming Free-Riding in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105(4) AM. ECON. REV. 1339 (2015) (noting without sanctions against non-participants, there are no stable coalitions other than those with minimal abatement. By contrast, a regime with small trade penalties on non-participants, a climate club, can induce a large stable coalition with high levels of abatement).

59) See generally Padmashree G. Sampath & Pedro Roffe, *Unpacking the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Debate: Fifty Years and Beyond* (Int'l Ctr. for Trade & Sustainable Dev., Working Paper ISSN 1684-9825, 2012) (explaining the history of the protection of IPRs).

이전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⁶⁰⁾, Ockwell과 다른 연구자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국가에는 초국가적 기업들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한 첨단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IPR의 가용성 및 시행 가능성은 기술 이전을 위한 충분한 동기를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지적 재산권 보유자의 가격을 엄청나게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PR은 기술에 대한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의의 차이는 무역규칙의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반해 기술 이전은 상품의 판매에 비해 자본으로 구현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업 방법이다. 기술은 구체화된 형태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며 완전히 코드화할 수도 없다. 오히려, 그것은 서면 형태로 전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암묵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대신,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학습을 통한 기술에 역량 함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IPR 보호를 다룰 때 수입 당사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즉, 구매자가 기술을 동화하지 않는 경우보다 해외 공급자에 대한 현지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이전이 IPR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끌 것이다. IPR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동화가 발생하여 경쟁이 심해질 경우 액세스를 금지하는 권한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⁶¹⁾.

60) See, e.g., COMM'N ON GROWTH & DEV., The Growth Report: Strategies for Sustained Growth and Inclusive Development (2008),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EXTPREMNET/Resources/489960-1338997241035/GrowthCommission_Final_Report.pdf (noting without social contracts, sustaining the policies that promote growth is ver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Technology Diffusion in the Developing World (2008),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GEP2008/Resources/complete-report.pdf> (stating taking issues without a contract to court takes a longer time as opposed to a contract dispute and thus hinders growth for technological companies).

61) See Adrian Lema & Rasmus Lema, Technology Transfer in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Insights from Wind Power, 23 GLOBAL ENVTL. CHANGE 301 (2013) (discussing licensing in the wind power industry); Joanna I. Lewis, Technology Acquisition and Innov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Wind Turbine Development in China and India, 42 STUD. IN COMP. INT'L DEV. 208 (2007) (examines how two leading developing-country firms have acquired and assimilated advanced technologies provides crucial insights into facilitating competition).

TRIPS 협정은 국가들이 거래된 기후 친화적 기술에 대한 IPR의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TRIPS 협정은 국가와 기업에 IPR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도 제공한다. IPR의 강도와 집행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거나 균일한 기술 정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나타난 국제적 경향을 고려할 때, 경제적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TRIPS 협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⁶²⁾.

2010년, WTO는 기후 협상을 위한 TRIPS 협정의 관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개요를 발표했다. 특허는 기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IPR 문제이지만, WTO는 다른 IPR 도구(상표, 식물 품종 권리, 인증 마크)도 다루고 있다. 또한, 2011년 WTO CTE에서 토론에 참여한 중국과 인도는 IPR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2013년, 에콰도르도 TRIPS 위원회 제출서에서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려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⁶³⁾.

3. 글로벌 부문 정책: 항공 및 해상 운송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글로벌 기후 위기 완화 과제는 항공 및 해운 활동에서 발생한다. 배출원인 비행기와 해양 선박은 국경을 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별 국가의 주권을 벗어난 국제 공간에서 부분적으로 운영된다. 독특한 영토와 관할권 운영을 고려하여, 기후체제는 항공과 해상 운송을 주로 배제해 왔다. 그들은

62) David Ockwe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low carbon technology transfer to developing countries--a review of the evidence to date, UK-INDIA COLLABORATION TO OVERCOME THE BARRIERS TO THE TRANSFER OF LOW CARBON ENERGY TECHNOLOGY: PHASE 2 (2008), <https://www.sussex.ac.uk/webteam/gateway/file.php?name=spru-teri-ids-phase-2iprs-and-low-c-tt-final.pdf&site=264>.

63) Alexandra Bhattacharya, WTO discusses intellectual property and green technologies transfer, THIRD WORLD NETWORK (Feb. 28, 2014), <http://www.twn.my/title2/climate/info.service/2014/cc140201.htm>.

UNFCCC 협상 대상이었지만, 파리협정은 이러한 국제적인 배출원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교토의정서는 제2.2조에 국제 항공 및 해양 병커 연료의 배출에 대한 모든 관련 조치는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와 국제 해양 기구(IMO)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제 협상의 느린 속도와 항공 및 해운 배출량의 지속적인 급속한 성장 이후, EU는 2012년부터 국제 항공을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부문에 대한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상당한 긴장을 초래했고, 그 후 EU는 강렬한 국제적 압력으로 조치를 중단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ICAO와 IMO 하에서 협상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⁶⁴⁾. 이러한 조직들은 항공 및 해운 배출 제한 조치의 필요성, 설계 및 경제적 결과, 업계 단체의 강력한 압력, 국가 연합의 비대칭적 이해관계(개도국에 차등 처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불일치 포함)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역체제의 역할도 제한적이다. GATS 협정은 항공 및 해상 운송 서비스에 대한 두 개의 부속문서에서 거의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항공 운송 서비스에 관한 부록(Annex on Air Transport Services)에 따르면 항공은 일반적으로 GATS의 실질적인 범위에서 제외된다(항공기 수리, 유지보수 서비스,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제외). 해운의 경우, 해당 "해상운송서비스 협상에 관한 부록"에 MFN 처리는 WTO 내에서 해상운송서비스에 대한 추가 협상이 끝난 후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1996년 6월 28일 결정에 따라 서비스무역 위원회는 다음 포괄적 서비스협상이 시작될 때까지 해상 운송 협상을 중단했고, 이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6년 9월과 10월에 열린 39차 총회에서 ICAO 총회는 항공 배출을 제한

64) See Sarabjett Hayer, Decision-making processes of ICAO and IMO in resp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POL'Y DEP'T A: ECON. & SCI. POL'Y (2016),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16/595332/IPOL_STU\(2016\)595332_EN.pdf](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16/595332/IPOL_STU(2016)595332_EN.pdf) (Both organizations have been exploring the issue, through the ICAO's Environment Branch and the IMO's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respectively; the 39th Session of the ICAO Assembly in September/October 2016 is expected to result in adoption of a market-based measure to limit aviation emissions).

하는 국제 시장 기반 조치인 "국제 항공을 위한 탄소 상쇄 및 감축 계획"(CORSIA)을 채택했다⁶⁵⁾.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수준을 초과하는 국제 항공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의 증가는 상쇄 크레딧의 구매 및 포기를 통해 보상되어야 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초기 파일럿 단계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첫 번째 시행 단계에서의 이 제도는 CORSIA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선택한 국가의 항공사들 에게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2027년부터 2035년까지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으로, 일부 최빈 개도국과 작은 섬의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포함된다. ICAO 체계 CORSIA는 *lex postorata legi priori*의 법적 원칙에 따라 ICAO 회원국 간의 기존 조약 기반 무역 약속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제한 기후 조치를 옹호할 때, 특히 교통 부문과 국제 공간에 적용되는 경우, 그것이 반영하는 결과와 합의는 제20조 GATT의 해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INDCS 무역 관련 정책 조치

2015년에 UNFCCC의 188개 당사자들이 INDC를 제출했다. INDC는 다양하며 특정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 각국은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재정적 요구와 같은 기후정책 목표, 조치 또는 조건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INDC의 무역 영향은 다른 국가의 무역 참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 경제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규제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WTO 분쟁(2.C 참조)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에너지 정책 조치는 점점 더 불공정 경쟁에

65)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International Aviation and ClimateChange--Policy, Standardization and Implementation Support, A39-WP/462 (2016), http://www.icao.int/Meetings/a39/Documents/WP/wp_462_en.pdf. For general discussion, see generally Alejandro Piera, Compliance Tools for a Global Market Based Measure for Aviation: Designing the Legal Form of a Global Aviation Market Based Measure, 10 CARBON & CLIMATE L. REV. 144 (2016).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반덤핑 조치 및 상계관세 뿐만 아니라 현지 콘텐츠 요구 사항 또는 기타 표준은 무역법과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국가 법률 (예: 재생 가능 기술 및 생산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며 산업 정책 결정에 대한 국가적 접근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162개 INDC 참여국 가운데 92개국은 국제 시장 메커니즘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5개국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⁶⁶⁾.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들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거래 옵션에 의한 탄소 재정 확보를 위한 일종의 완화 시스템을 판매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단위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국가는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등 소수에 불과하다. 29개국은 미래에 국제 시장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18개국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INDC는 지금까지 많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 배출량을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당사국들은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예: 인도: 2022년까지 풍력 60GW, 태양광 100GW; 중국: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의 15%, 2030, EU: 2030년까지 40%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목표에 대한 세부 사항 없음)⁶⁷⁾.

파리협정에서의 NDC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고려할 때, 각국의 접근법은 무역 파트너의 정밀 검증에 점점 더 노출될 수 있지만, 정책 관행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파리협정의 이행이 무역체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지침의 부재는 향후 중대한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에 대한 포럼의 높은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66) See Nicolas Kreibich & Wolfgang Obergassel, Carbon Markets After Paris: How to Account For Transfer of Mitigation Results, JIKO Policy Paper No. 01/2016 (Jan. 2016). See also Environmental Defense Fund &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supra* note 152, at 6.

67) See generally Su Wei, Enhanced Actions On ClimateChange: China'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2015), <http://www4.unfccc.int/Submissions/INDC/Published%20Documents/China/1/China's%CC20INDC%20-%20on%2030%CC20June%202015.pdf>.

5. 국가 및 지역 탄소 가격: 배출권 거래 및 탄소세

국가 기후정책의 무역적 의미에 대한 논쟁은 교토의정서와 산업화된 240개국의 탄소 가격 책정으로 시작되었다. 기후 경제학의 관점에서, 기후 위기 완화를 촉진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 첫째, 국내 정책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같은 청정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투자 수익률 증대와 비시장 장벽 감소를 통한 시장 활성화는 주요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생산자들을 위해 비용을 올리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탄소세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스템과 같은 명시적인 탄소 가격을 성능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암묵적인 기술규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청정기술에 투자하거나, 생산을 줄임으로써 증가하는 비용을 억제할 수 있다. 기후 정책과 관련된 규제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국가의 생산자와 기후정책의 철저한 규제를 받는 생산자 사이의 경쟁에서 일방적인 탄소 가격 책정이나 규제가 얼마나 비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내수가 더 저렴한 수입품으로 이동하면 해외 생산이 증가하고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여 다른 나라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탄소 누출'이라고도 함)효과를 상쇄한다.

탄소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조치와 그 외의 모든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입품이 수입국의 탄소 가격 정책(즉, 세금 또는 배출 허용 범위 적용)에 해당한다면 역내로 유입되는 수입량을 줄여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된 정책을 국경 탄소 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 BCA)이라고 한다. BCA는 수입 대금과 수출 대금의 상황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비세(예: 부가가치세)에 따라 적용되는 국경세 조정과 유사하다. 또한, BCA에는 수출업체에 대한 리베이트가 포

함되어 해외시장에서의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다⁶⁸⁾. BCA 조치의 도입은 2010년 미국 청정에너지 및 보안법, 2014년 제안된 미국 기회 탄소 수수료법 등을 통해 EU와 미국에서 검토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기업의 경우, 증가된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비과세나 기타 지불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과거나 현재의 배출권을 기준으로 배출권 인증서를 할당받으면 배출권 구입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BCA 측정법을 개발하기 위한 두 가지 기본 개념이 있다. 첫째는, 국내 정책 도구(법적 국경세 조정에 적용되는 GATT 제2(a)에 따른 몇 가지 기준에 따름)에 대한 제3조의 요건에 부합하는 BCA를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GATT 제20조의 시험을 통과하고 예외를 인정받는 방식으로 BCA를 설계하는 것이다. 방식의 선택은 WTO 규정과 일치하는 BCA 조치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WTO 규정의 법리성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BCA의 도입은 법적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별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환경적 조치의 목적은 그 설계와 실천을 통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⁶⁹⁾.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국내 산업 보호에 기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BCA는 최소한 거래 상품의 탄소 함량을 참조해야 하며 탄소 누출 감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배출권의 무상배당이나 탄소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간접 또는 직접 금전적 지급도 무역 정책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그러한 무상배

68) See, Cosbey et al. 2009, supra note 80, at 17; Cosbey et al., Developing Guidance for Implementing Border Carbon Adjustments, REV. OF ENVTL. ECON. & POL'Y (forthcoming 2016) [hereinafter Cosbey et al. 2016].

69) See Cosbey et al. 2016, supra note 206, at 8-9 (per footnote fifteen: In WTO case law, the legality of exceptions depended on the actual implementation (targeted goods, targeted countries of origin), or the consideration of multilateral solutions to an environmental problem (U.S.-Shrimp case Appellate Body). In the E.U.-Asbestos Case (DS135: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the discriminatory impact of a trade measure applied to a "like" imported product was seen to depend on its competitive relationship to the domestic product).

당이 실제 발생비용에 대한 영향을 지나치게 보상하는 경향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무상배당이 발생비용에 대해 과도하게 보상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정책은 보조금 논란을 초래하고 WTO 규칙(특히 SCM 협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⁷⁰⁾. 이것이 비록 이론적 추측이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논쟁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6. 에너지 보조금

보조금은 재생에너지 투자와 생산을 육성하기 위해 적용되며, 화석연료에 대한 기존보조금은 탄소 집약적 연료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두 가지 이유에서 NDC를 통해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탄소 및 고탄소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보조금은 고용을 확보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산업 부문의 보호 또는 발전, 빈곤 완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제고와 같은 다양한 비기후 정책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무역규칙과 충돌할 수 있다. 보조금의 범위, 구성 내용 및 적용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사회경제적, 환경적 악영향이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 에너지 기구는 2014년에 소비 보조금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3%(이산화탄소 톤당 미화 115달러)를 차지했다고 주장한다⁷¹⁾.

WTO 무역체제와 에너지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는 간단하지 않다. 에너지와 에너지 시장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에너지가 국제무역 시스템에 의해 규제되는 다른 무역 상품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재화와 서비스 둘 다 될 수 있으

70) See SCM, *supra* note 42; see generally WTO, Anti-dumping, subsidies, safeguards: contingencies, etc, *supra* note 119.

71)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nergy & ClimateChange,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23 (2015), <https://www.iea.org/publications/freepublications/publication/WEO2015SpecialReportonEnergyandClimateCh>.

며, 이는 SCM 협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WTO 규정에 의해 동시에 관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분쟁은 주로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Part II 참조). 이론상 이러한 규칙들은 화석연료 보조금에도 적용된다. 수출 실적에 따라 또는 수입품에 대한 국내 사용 시 발생하는 보조금은 WTO 법에 따라 금지되지만, 기타 보조금은 특이한 경우로 간주 되어 다른 회원국에 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기타 보조금은 분쟁의 대상이 된다. 또한, SCM 협정은 WTO 회원국들이 국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다른 회원국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입증되었다. 재생에너지 지원과 달리 WTO 분쟁해결 시스템 이전에 WTO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한 화석연료 보조금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조금의 경우, 그러한 보조금의 혜택이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생산자, 소비자 또는 둘 모두에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보조금이 "특정적"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조금 통지율이 전반적으로 낮은데, 이는 아마도 무역분쟁의 시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어떤 보조금에 대한 통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성 부족과 그것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WTO 회원국들이 보조금 신고를 하더라도 감시 메커니즘이 보조금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⁷²⁾.

72) See Ronald Steenblik & Juan Simón, A New Template for Notifying Subsidies to the WTO, GLOBAL SUBSIDIES INITIATIVE 8 (2011), http://www.globalsubsidies.org/files/assets/_template_for_notifying_subsidies_to_the_WTO.pdf.

제 4 장 기후협정과 무역협정의 상호작용 및 해결방안

제 1 절 무역협정의 변화를 통한 상호작용

WTO와 RTA의 법적 규칙을 기후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일련의 의무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과 기후체제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찾는 방법에 관한 많은 제안이 있다. 그러나 도하라운드 협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상황에서 법제화의 전망은 어둡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개혁 옵션을 정리하고, 만약, 법적 개혁이 없을 때 보다 실용적인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대안을 평가할 때 제안된 솔루션이 목표를 더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와 제안된 변경 사항이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무역규칙과 제도에 의한 국제 및 국가 기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WTO와 RTA에서 두 체제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사양과 개혁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기후정책 조치를 위한 무역규칙을 지원하는 것은 파리협정의 이행에 초점을 맞춘 특정 문제에 대해 수립될 수 있다. 셋째, 제도적 협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화될 수 있다.

1. WTO 협정의 변경을 통해 기후-무역 조치의 중복 해결

WTO 규정과 기후정책 조치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지침은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WTO 규칙 개정의 찬성하는 한 가지 주장은 WTO 분쟁의 사례별 성격이 파리협정에 따른 NDC의 이행을 위한 충분한 구조적 법적 지

침을 제공하지 않고 기후 관련 분쟁의 해결을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규칙에 의해 우선 그리고 가장 먼저 안내되는 기구에 맡긴다는 것이다⁷³⁾. 법적 지침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면, 이는 WTO 회원국에 의해서만 제시될 수 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관련 무역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WTO 협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대책이나 다자간 환경협정에 따라 취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수용하도록 GATT 제20조를 개정하거나 녹색 보조금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SCM협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법률적 관점에서는 개정이나 새로운 규칙 제정을 통한 혁신적 법체계 개혁이 보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것은 국가 간 법적 확실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기후와 무역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그러한 규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개정의 내용에 대한 명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안을 협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정안을 제출하려면 사전 합의가 필요하고, 또한, 수정안의 내용 및 수정안이 적용되는 특정 조약 조항에 따라 최소 3분의 2 이상의 회원이 동의해야 하거나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합니다⁷⁴⁾. 개정안은 또한 충분한 수의 WTO 회원국들이 이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방식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우 복잡한 법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지금까지의 개정안은 WTO 실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둘째, 특정 WTO 의무를 제한된 기간 포기하는 것이다. 예외 상황일 경우 채택될 수 있는 웨이버는 비록 실제로는 전체 합의가 원칙이지만 최소 4분의 3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포기의 예로는 지역 경제 통합 또는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

73) See James Bacchus, Global Rules for Mutually Supportive and Reinforcing Trade and Climate Regimes, E15 EXPERT GRP. ON MEASURES TO ADDRESS CLIMATECHANGE & THE TRADE SYS. (2016), http://www3.weforum.org/docs/E15/WEF_Climate_Change_POP.pdf. See also EPPS & GREEN, supra note 109, at 260, 265 (providing details about the discussion how the WTO regime and dispute settlement should better take into account non-trade concerns).

74) See Agreement Establishing WTO, supra note 34, at art. X.

한 비호혜적 무역 선호의 정당화가 있다. WTO 회원국은 기후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예외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Bacchus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탄소의 양을 기초로 한 모든 무역 제한 기후조치에 대한 WTO 의무의 포기를 제안했으며 이는 BCA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또한 파리협정과 같은 UNFCCC 기후협정과 다자간 "기후 클럽"의 협력 증진을 위한 조치에 대한 포기도 제안했다. 설명이 필요한 핵심 질문은 면제의 범위를 정의하는 방법, 즉 실제 "기후 조치"가 무엇인지이다. 면제의 시간 제한적 특성은 면제가 장기적 확실성을 낳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동시에, 면제의 일시적인 성격은 영구적인 수정보다 더 매력적이다. Feichtner는 면제가 비경제적 이익의 방향으로 WTO 규범의 일반적인 수정을 허용한다고 지적한다⁷⁵⁾. 조금 더 정확하게는 WTO 관할권을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WTO보다 더 큰 능력과 합법성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권한을 가진 다른 국제법 체제"에 유리하게 적용된다. 면제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WTO 하의 기후정책 문제를 고려하는 데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면제 도입에 대한 제한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파리협정에 따른 NDC의 이행이 특정 기후정책 조치를 포기해야 하는 압력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 할 경우, 이 협정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갈등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셋째, WTO 협정의 특정 조항에 대해 회원국 3/4의 과반수(WTO 설립협정 제9.2조) 찬성으로 유권해석을 채택하는 것이다. Buck and Verheyen은 회원들이 제품의 PPM(예: 제품에 포함된 배출물의 양)에 근거한 특정 규정에 동의할 수 있다면 GATT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PPM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제안의 광범위한 성격은 실제로 정치적 타당성을 제한한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약하지만 GATT 제10조의 적용범위를

75) See Isabel Feichtner, The Waiver Power of the WTO: Opening the WTO for Political Debate on the Reconciliation of Competing Interests, 20 THE EUR. J. OF INT'L L. 615, 618 (2009).

명확히 하는 것과 같은 개정안을 이행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 다른 제안은 파리협정(또는 UNFCCC 참조)에 따라 취해진 기후 조치가 GATT 제10조 및 GATS 제14조의 범위에 포함되는 조치라는 선언이다. GATT의 20조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의 도입은 체제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수정이나 포기여 불과하다. 권위 있는 해석은 제20조의 해석에 대한 명확한 틀을 세울 것이고, 따라서 WTO 체제하에서 기후 관련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합의를 문서화할 것이다. 그것은 주로 제20조 GATT에 관한 기존의 의견서를 긍정할 것이지만, 이를 명시함으로써 특정 기후조치에 대한 반대자들의 사법적 조치를 저지할 수 있다. 권위적인 해석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파리협정이나 NDC를 언급하는 등 권위 있는 해석이 매우 광범위할 경우, 기후 조치가 국가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하는 의제와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무역 정책 도구의 보호 정책 적용에 대한 전권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권위 있는 해석은 비무역 규칙을 무역분쟁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은 WTO 협정의 특정 조항에 대한 기후 친화적인 해석으로 균형을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정책을 시행할 때 WTO 회원국들에게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역 관련 기후조치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한부 '평화조항'이 될 것이다. 평화조항은 WTO 회원국들이 무역을 제한하거나 WTO 분쟁 해결에서 무역 효과를 가지는 국가 기후 조치나 대응책에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최소한 3년을 기다리도록 할 수 있다. 농업 보조금과 관련하여 9년 동안 이와 유사한 조항이 시행되었다. Hufbauer 등은 기후 관련 보조금에 초점을 맞춘 유사한 조항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러한 조항은 기후 관련 무역 조치에 사용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Hufbauer 등이 제안한 바와 같이, 평화조항은 BCA, 251과 같은 치외법적 함의가 있는 기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기로 국가들을 약속할 수 있다. 이것은 신뢰와 선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영향

을 받는 다른 국가들이 이 조치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무면제인 웨이버와 마찬가지로 평화조항의 과제는 범위를 바로 잡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파리협정을 합법적으로 이행하거나 기후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골라내는 것이 과제이다. 범위를 맞출 수 있다면 평화조항이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더 대립하기보다는 건설적인 대화에 쓰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은 연기될 뿐이고 평화조항은 만료 될 것이다. 평화조항이 ETS에 따른 배출 허용량의 관대한 무료 할당과 같은 비효율적인 기후정책 관행을 방해하는 경우 같은 주장이 적용된다.

넷째,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조정을 제안한다. WTO DSB의 관할권을 비무역 규칙과 원칙으로 확장하자는 제안이 존재하며, 이는 WTO 사법적 의사결정에서 자유무역 규율에 비해 기후 의무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이 단기간에 설득력을 얻을 것 같지는 않다. 보다 실현 가능한 제안은 WTO 패널과 AB의 구성에 기후 관련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술적 전문지식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예: 특정 정책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 결정 지원).

마지막으로 Hufbauer 등은 합의의 난제를 인정하면서 기후-무역 인터페이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기 위한 다자간 무역 및 기후 코드를 제안하고 있다. 그들은 이 강령이 WTO 협정의 부속서 4에 따라 정부조달 협정과 같은 다자간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와 유사하게 ICTSD는 기후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기술 기준과 같은 비관세장벽도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무역협정"을 제안했다. 다자간 협정이 다른 WTO 회원국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겠지만,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협정의 시행을 허용하는 부속서 4에 포함되는 것은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정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모든 WTO 회원국이 WTO 협정의 MFN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제를 포괄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국 수가 적기 때문에

WTO 체제 내에서의 협상은 쉽지만, 부속서 4의 추가 협정으로 승인하려면 WTO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WTO 하의 그러한 다자간 협정이 반드시 더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GPA가 이러한 효과를 낳는 것은 아니며, 제한된 회원국으로 구성된 협정은 추가로 WTO 회원국들의 참여가 열려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원국이 확대될 수 있다. 무역 상품에 국한된 EGA 협상은 다자간 협정이 WTO 회원국들 간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자간 기후 및 무역 협력은 WTO 체제의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는 무역체제의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다.

2. RTAs의 변화를 통해 기후-무역 중복을 해결

RTA는 이미 환경 표준이 무역협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RTA는 잠재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기후 목표를 더 촉진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형태의 식량 협상은 기후 목표와의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고 과도한 경쟁을 막을 수 있다. RTA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국가표준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파트너들이 기준을 낮춰 경쟁력을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RTA는 표준과 규정을 조정함으로써 무역 관련 기후 측정치에 대한 공통 규칙을 설정하는 데 있어 더 상세하고 정교할 수 있다. WTO 규정과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RTA 당사자들이 제3국의 기준에 따라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분쟁 해결 규칙과 협의는 투자자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을 통해 국가의 기후 규정에 도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을 규제하는 투자 관련 조항과 같은 기후정책 우려와 일관되게 관련될 수 있다⁷⁶⁾. 투자와 관련

76) See Isabel Feichtner, The Waiver Power of the WTO: Opening the WTO for Political Debate on the Reconciliation of Competing Interests, 20 THE EUR. J. OF INT'L L. 615, 618 (2009).

하여 기후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선택지는, 첫째, 회원국들은 기후 규제를 위해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는 투자 예외(또는 새로운 예외 신설)를 확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범위에서 기후 규제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투자 협정의 핵심 개념(예: "간접 수용" 또는 "공정하고 공정한 대우" 기준)을 좁히거나 명확히 하는 것이 포함된다. 둘째, 당사자들은 저탄소 투자를 장려하는 조항에 동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투자자를 위한 저탄소 성능 요구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투자를 유치하고 촉진하기 위한 목적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RTA가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장기적으로 기후-무역 상호작용에 대한 다자간 합의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이 잠재력의 실현 정도는 RTA의 당사국들에 따라 다를 것이다. 특정 표준을 협상하는 당사자들의 시장 지배력이 클수록, 그러한 표준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진다. 다른 국가들은 더 많은 수의 RTA에 표준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리고 궁극적으로 WTO를 통한 다자화를 통해 이를 일방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WTO를 통한 규칙 개발에 대한 관심은 짧은 기간에 메가 지역 협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과 같은 양자 협정은 이러한 영향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작은 합의들은 토론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입할 수 있다. TTIP 등 초대형 지역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미국과 EU 간 기후 친화 기술 교역을 촉진하고, 나아가 표준 정렬 등 규제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환경법제정과 시행을 강화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과 같은 기후 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것과 같은 다른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⁷⁷⁾. 따라서, RTA는 표준을 성문화하고 무역파트

77) Ingrid Jegou, Sonja Hawkins, & Kimberley Botwright, What role for trade and investment in the new climate regime?, INT'L CTR. FOR TRADE & SUSTAINABLE DEV. (Feb. 19, 2016), <http://www.ictsd.org/bridges-news/biores/news/what-role-for-trade-and-investment-in-the-new-climate-regime>.

너 간의 규칙을 조정함으로써, 투자 규칙 및 관련 분쟁 해결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른 무역 및 기후 관련 이슈 영역의 정보 센터 역할을 통해 기후정책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 2 절 기후협정의 변화를 통한 상호작용

다음은 배출권 거래 및 탄소 가격 책정, 에너지 보조금,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무역-기후 간 상호 관련 특정 이슈에 대한 개혁 전망에 대해 기술 한다.

1. 배출권 거래 및 탄소 가격 책정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완화 결과의 국제적 이전을 위한 세부 규칙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교토의정서의 유연한 메커니즘과 국내 시장 기반 기구들에 대한 과거의 연구는 이미 제6조에 따른 메커니즘이 국제 무역법과 어떻게 교차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⁷⁸⁾. 주요이슈는 EU ETS에 따라 CDM 크레딧에 적용되는 지리적 기원과 같은 기준에 기초한 탄소 단위의 균질성에 대한 제한과 관련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적격 유닛과 관련된 서비스와 같이 간주 될 부 적격 유닛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여 GATS 규칙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문제는 위에서 논의된 탄소 단위에 대한 제한이 GATS 제14조의 범위에 속한다는 권위 있는 해석과 같은 하나 이상의 개혁 대안(파트 IV.A)으로 해결될 수 있다.

78) See, e.g., Keohane, Petsonk & Hanafi, *supra* note 164, at 185; Werksman, *supra* note 164, at 251; Glenn M. Wiser,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Versu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Can Free-Market Greenhouse Gas Emissions Abatement Survive Free Trade?*, 11 GEO. ENVTL. L. REV. 531, 531 (1999).

BCA의 도입에는 보다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 BCA의 설계는 GATT 제3조의 차별금지 원칙과 내부세 요건을 따를 수 있다. 둘째, BCA가 GATT의 제3조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20조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무역에 가장 제약이 없는 모든 대체 수단을 소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20조는 비제품 관련 PPM(여기서 내재된 탄소)에 기초한 국가적 처리에서 벗어나 비효율적인 기후 정책(탄소 누출)을 예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탄소 가격을 통한 NDC의 구현은 BCA에 대한 특정 규칙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 당분간, 정부가 BCA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두 가지 WTO 루트를 탐색할 수 있다. 이 도구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잠재력으로 인해 NDC 구현의 일환으로 고려할 사항이 관련된다면 보다 명확한 행동 강령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BCA 도입은 배출허용금 무료배정 등 이미 WTO 회원국의 유출방지 정책에 비추어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에너지 보조금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여 WTO 보조금 규정의 개혁과 함께 재생에너지 촉진에 관한 새로운 협약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한편, 재생에너지 정책 시행에 대한 WTO 분쟁 사례법은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의제와 국제 경쟁 우려 사이에서 생산적인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분쟁에서 인용된 WTO 협정은 GATT, 반덤핑, TBT, TRIMS, SCM 협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무역규칙과의 충돌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지 콘텐츠 요구 사항은 분쟁의 공통적인 특징이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은 고용을 늘리는 것을 포함하여 국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통상법은 이 같은 산업정책의 목적을 다루지 않으며, 보호무역주의가 무역 상대국의 심각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규칙 변경으

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법률 개혁 옵션(예: 수정, 포기, 평화조항 또는 권위 있는 해석)은 보호주의적 남용을 배제하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방향에서 보다 상세한 개혁 제안에는 SCM 계약에 따른 범주의 보조금을 변경하거나 아직 다루지 않은 특정 보조금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좁게 정의된 비실행성 보조금 범주(긍정적인 지원 상품 목록 및 관련 설계 기능)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그러한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통지 템플릿을 채택하고 비정부기구가 실행 가능한 보조금의 수준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옵션 중 어느 것도 WTO의 법적 프레임워크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이 SCM 협정 하에서 다른 WTO 회원국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금지된" 또는 "조치 가능한" 것으로 간주 될 경우⁷⁹⁾ 또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도전받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GATT 또는 TRIMS 협정 하에서 그러한 보조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개혁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WTO 회원국들은 화석연료 보조금의 기후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재협상할 용의가 거의 없어 보인다. 비록 환경적으로 해로운 보조금, 즉 어업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화석연료 보조금의 경우⁸⁰⁾ 그러한 보조금의 순수한 규모와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위험은 훨씬 더 높다.

79) See Chris Wold et al., Leveraging ClimateChange Benefits throug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re Fossil Fuel Subsidies Actionable?, 43 GEO. J. OF INT'L L. 635, 656-57 (2012) (indicating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one member to prove that another member's subsidy causes an "injury"); but see Horlick & Clarke, supra note 268, at 10 (considering fossil fuel subsidies as "actionable").

80) Sadeq Z. Bigdeli, Will the "Friends of Climate" Emerge in the WTO? The Prospects of Applying the "Fisheries Subsidies" Model to Energy Subsidies, 2 CARBON & CLIMATE L. REV. 11 (2008).

3. 기술 이전 및 지적 재산권

IPR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해결과 지적재산에 대한 다양한 개념은 종종 제약이나 국방 기술의 예에 기대어 기후 기술 이전을 위한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진다. 2013년 에콰도르가 제출한 것과 같이 우려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제안에는 IPR 규칙의 수정 또는 TRIPS 협정 및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에 따른 지적 재산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언 등이 포함된다. 주요 측면은 포기 또는 권위 있는 해석이 제시되었던 TRIPS 제13조 및 제30조(특허 사용)의 해석이다⁸¹⁾. 하지만, 어떤 해결책이라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의 우려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IPR의 보호와 해석에 대한 TRIPS Council에서의 토론은 계속될 것이다. 기후 보호를 촉진하는 것은 통합된 필요성이지만, IPR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은 기후 기술과 노하우의 보호라는 특정 측면에 대한 해결책을 가로막고 있다. IPR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것은 토론이 가진 고도의 정치적 성격과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기득권 세력에 비취볼 때 희박해 보인다.

81) See Ahmed Abdel Latif et al., Overcoming the Impass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ClimateChange at the UNFCCC: A Way Forward, INT'L CTR. FOR TRADE & SUSTAINABLE DEV. 1, 36-37 (Nov. 2011), <http://www.ictsd.org/sites/default/files/research/2012/02/overcoming-the-impasse-on-intellectual-property-and-climate-change-at-the-unfccc-a-way-forward.pdf>.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요약

무역과 기후체제는 지금까지 심각한 마찰 없이 공존해 왔다. 최근 기후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파리협정이 국가 주도의 완화를 강조하면서 정책 분야 간 상호작용이 늘어날 수 있다. 두 체제 모두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는 무역 관련 기후정책 조치를 지지하는 규칙과 절차를 만들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 체제는 수년간 협상을 통해 무역과 관련된 측면을 고려했다. 그러나 UNFCCC와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기후 정책과 무역규칙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대신 대응 조치의 제목 아래 무역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WTO 조항은 기후 보호 조치와 충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가 관련된 공정과 생산 방법에 따라 국내와 외국 상품을 차별할 수 있다. 상품의 유사성과 WTO 회원국의 동등한 처우는 WTO 비차별 체제의 주요 특징이다. 하지만, 환경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예외 조항도 있다. WTO 협정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신기술을 촉진하려는 국가 기후정책이나 청정기술에 대한 국제 IPR 보호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점점 더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기후 관련 기술 무역 및 관련 서비스의 증가 추세로 인해 복잡성이 발생한다. WTO 판례법은 기후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후 친화적인 산업 전략을 지원하는 지나치게 보호주의적인 방식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WTO 분쟁 해결기구는 환경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지만, 전통적인 무역 이해 관계로 부터 계속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WTO 회원국들은 분쟁 조정이 기후 보호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게 되면 패널들과 AB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지역 무역 거래는 국가들이 기준과 산업정책을 통해 기후 보호를 증진하는 데

있어 갈등을 예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RTA는 참여 파트너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보다 유연하게 충족하고 있는데 이는 RTA와 메가 지역 무역 거래에 대한 추세를 통해 기후정책 목표가 적절한 관심을 받는다는 이점이 있다. 파리협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역과 관련하여 더 많은 의문점들을 제기할 것이다. 한 가지 이슈는 국제배출가스 감축 단위의 시장 메커니즘과 거래에 관한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경험을 볼 때 배출량 단위 교환을 방해하는 무역 규칙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반면, 관련 서비스(특히 금융 시장과 관련된)는 GATS에 더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향후 수출입 시 PPM에 따른 처리도 문제인데, 목표치와 관련 정책이 보다 야심차고 탄소 가격을 책정하는 새로운 국가 연합이 등장하면 이런 의문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BCA는 과거에 이미 정치적인 관심을 끌었고, 그들의 적용은 국가 기후정책이 강화될 때 다시 관심거리가 될 수 있다. 배출가스 가격 책정, 에너지 생산(재생에너지 및 화석연료 지원 포함) 및 무역을 통한 특정 기술 육성은 무역 정책 목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므로 기후 및 무역체제의 기관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더욱 야심찬 NDC가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 관련 기후대책은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이다. 구체적인 IPR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RTA에서의 규칙뿐만 아니라 TRIPS 계약에 따른 협의가 이 분야 진전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제한적인 무역 관련 IPR의 조정은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며, 이것은 UNFCCC의 기술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WTO 하의 추가 협상을 지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석연료 보조금의 감소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WTO를 포함한 국제기구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무역규칙과 협상이 기후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WTO 법률 개혁은 정치적 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GATT의 제20조(b), (g)와 서문(Chapeau)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진전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방안이다. 이것은 무역 의무의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또한 WTO가 회

원국의 기후정책을 수용하는데 열려있다는 중요한 정치적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권위 있는 해석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이미 합의되었거나 일반적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WTO에 따른 분쟁 조정시스템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기후 전문지식이 WTO 분쟁 해결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WTO의 DSU 제13조와 다른 여러 WTO 협정은 이미 분쟁 패널들에게 전문가로부터 정보와 기술적 조언을 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관련 규칙과 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을 최대한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RTAs 협상은 기후와 무역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시험하기 위한 유망한 방법이다. 특히, 소위 메가 지역 무역 거래는 협상 당사자들이 기후 보호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바닥으로 가는 경쟁을 피하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한 기후 보호 규칙을 더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넷째, WTO 협정의 부속서 4에 기후 관련 다자간 무역협정을 채택하여 무역 및 기후정책에 대한 규칙을 정하기 위한 WTO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WTO 회원국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이미 환경상품협정을 체결했다. 특정 기후정책 문제를 다루는 무역 및 기후협정은 진보적인 WTO 회원국의 무역을 통한 기후보호 추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WTO와 UNFCCC의 기구는 투명성과 책임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환경기후변화위원회를 통한 WTO의 확대된 제도적 설정이 하나의 선택이 될 것이다. UNFCCC 사무국은 이미 CTE에 옵저버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CTE의 특별 세션에 회의별로 초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WTO(예: CTE 및 무역 정책 검토 메커니즘)와 UNFCCC(과학기술 자문 및 대응 조치 이행의 영향에 관한 포럼)에서 기존 기구들의 조정을 증가시킬 수 있는 범위는 여전히 존재한다. 목표는 NDC 구현에 대한 정기적이고 정교한 정보 교환이어야 한다.

제 2 절 시사점

환경 규제와 무역 자유화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래의 WTO 협정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국제 무역시스템 내에서 유효한 환경 규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WTO에 구현된 세계 무역 프레임워크는 진화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최근 수십 년 동안 두드러진 정책 목표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에 이익이 되는 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무역 정책에 영향을 주는 환경 규제가 항만, 해운, 항공에도 그 영역을 넓혀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과 관련 해서는 지속 가능 경영 체제로 환경 경영 체제를 도입하여 전 생산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연구개발부문은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기술개발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생산 공정 및 물류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방출량에 대한 진단과 방출된 온실가스를 포획하여 저장하는 등의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지향적인 기술개발은 장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배출권 거래부문은 동종업계의 네트워크나 연계대응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절감하는데 효율적이며, 따라서 업종별 협회 등의 주도하여 업종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공동 대응으로 거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ESCO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기에 조기 ESCO사업 전망이 밝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ESCO기업에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 신사업의 기회로 이용 CDM 프로젝트 중계서비스,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서비스 에너지 절약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끝으로 국내기업이 파리협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 전반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체제를 설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규제 및 압력은 교토의정서를 거쳐 파리협정에서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계획이 단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중·장기적인 틀을 세운 후 그에 따라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어야만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202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닌 그 후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지속가능한 발전 메커니즘은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로부터 얻은 경험을 통하여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완화 기여라는 파리협정 체제로 새로운 형태의 배출감축 크레딧 제도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에 의해 모든 당사국이 국가결정기여(NDC)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배출단위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의 참여자들이 파리협정의 시장 메커니즘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가능 발전 메커니즘에 청정개발체제의 관련 규칙을 반영하여 이전의 체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리협정의 운영은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될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의 이행지침으로부터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 메커니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파리협정의 규정들이 세부 이행지침을 통해 공포되고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부 이행지침을 통해 일개 조항에

서 결정된 내용이 다른 조항에서 결정된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리협정과 무역협정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외에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다른 여러 협상의 세부 안건들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탄소 감축과 관련된 이행 조항인 제6조와 같은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규범적 해석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은 본 논문의 한계점이며 앞으로 향후 연구의 과제로 진행하겠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준하(2020), “USMCA와 환경” , 「국제경제법연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8(1), 53.
- 강만옥·황욱·이상용(2007), 「에너지·전력부분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방안과 파급효과 연구(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강민지(2018),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 개정과 시사점” , KIEP 기초자료.
- 김철수(2019), “TBT협정상 기술규정의 정당한 목적에 관한 해석기준” , 「무역통상학회지」, 한국무역통상학회, 19(2), 146.
- 김민정(2013), “TBT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 및 발전과제” , 「통상법률」, 법무부, 제111호.
- 김호철(2020),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신통상규범 검토” , 「통상법률」, 법무부, 147호, 170-172.
- 박덕영(2018), 「국제기후변화법제」, 박영사.
- 박덕영, 김승민, 이재영(2018), 「WTO 무역과 환경사례 연구」, 박영사.
- 박웅용(2011), 「WTO 협정」, 법문사.
- 박찬호(2014), “OECD 최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규범분석-우리나라 녹색성장 규범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 송유철(2017), “신기후체제 출범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 「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과학학회, 제24권 제2호.
- 윤익준(2017), “파리협정의 주요 쟁점 및 전망” , 「한양법학」, 한양대학교 법학부, 제28권 제2호.

이은섭 · 오병석 · 이양기 · 김선옥(2012), “WTO체제 하의 환경과 자유무역간의 조화”,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4권 제1호.

이진면 · 민성환 · 성열용 · 김재덕 · 류한얼 · 김혁중(2014), 「무역기술장벽대응활동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국가기술표준원.

이천기(2018),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WTO/FTA 합치성-」, 한국법제연구원.

이효영·엄준현(2014),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대외정책연구원.

최원목(2015), 「농업통상법」, 법영사.

환경부(2002),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 대응방안」, 환경부.

홍길중(2013), “기후변화협약 무역관련 조치와 WTO 규범의 연계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14권 제3호.

[외국문헌]

Scot, Anderson, “The America First energy polic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Journal of Energy&Natural Resources Law, Vol.35 No.3, 2017.

Casier, Liesbeth, “Shining a Light on Fossil Fuel Subsidies at the WTO: How NGOs Can Contribute to WTO Notification and Surveillance”, INT’ L INST. FOR SUSTAINABLE DEV. vol. 19, 2014.

Chan, Nicholas, “The ‘New’ Impacts of the Implementation of ClimateChange Response Measures”, REV. OF EUR., COMP. & INT’ L ENVTL L., vol 25, 2016.

- Droege, Susanne, "THE TRADE SYSTEM AND CLIMATE ACTION: WAYS FORWARD UNDER THE PARIS AGREEMENT" , S.C. J. Int' l. L. & Bus. vol 13, 2016.
- Emirhan, Altunkaya,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History and Evolution of Negotiations and Agreements" , Beykent Universitesi Hukuk Fakltesi Dergisi, Vol.3 No.6, 2017.
- Feichtner, Isabel, "The Waiver Power of the WTO: Opening the WTO for Political Debate on the Reconciliation of Competing Interests" , THE EUR. J. OF INT' L L. vol 20, 2009.
- Feng, Y., "A Study on the Labeling System: with reference to WTO TBT recent cases" ,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018.
- Ganz, David A. & Ala' i, Padideh, 「ClimateChange Innovation, Products and Services Under the GATT/WTO System, in RESEARCH HANDBOOK ON INTELLECTUAL PROP AND CLIMATE CHANGE」 , J. D. Sarnoff ed., 2016.
- Howse, Robert & Eliason, Antonia,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rategies to Address ClimateChange: An Overview of the WTO Legal Issues, in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AND THE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 Thomas Cottier eds., 2009.
- Kennedy, Matthew, "Legal Options for a Sustainable Energy Trade Agreement" , INT' L CTR. FOR TRADE & SUSTAINABLE DEV. vol 1, 2012.
- Kim, H. J., "Some Legal Questions Regarding the Labelling under TB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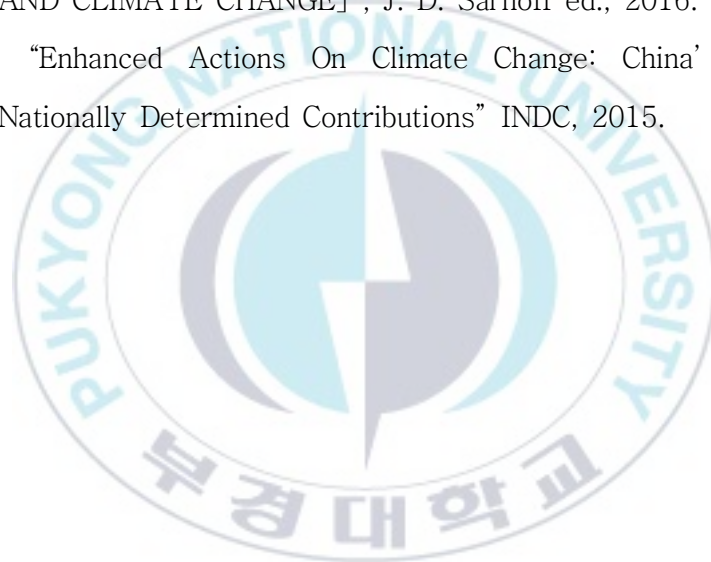
- Agreement— With a Focus on the Labelling for Fisheries” ,
Ewha Law Journal, Vol. 18, No. 1, 2013.
- Lee, E. S. and Park, E. J., “Environmental Labeling Programs for
Harmonization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 International
trade law, No. 77, 2007.
- Lee, J. S., “The case study on Trade and Environment under
GATT/WTO” ,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2008.
- Lee, L. R., “A Legal Study on the Carbon labelling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 International trade law, No. 100,
2011.
- Lee, M. A., “Environmental Labelling Schemes and the TBT Agreement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chemes of WTO Members” ,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11.
- Lee, S. Y., “The Compatibility of Carbon Labelling Schemes with WTO
Norms”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6, No.
4, 2011.
- Mehling, Michael, “A New Direction for US Climate Policy: Assessing the
First 100 Days of Donald Trump’ s Presidency” , 11 CARBON
& CLIMATE L. REV. vol 11, 2017.
- Monkelbaan, Joachim, “Trade in Sustainable Energy Services” , INT’ L
CTR.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 vol 1, 2013.
- Nordhaus, William, “Climate Clubs: Overcoming Free-Riding in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 AM. ECON. REV. vol 105, 2015.
- Shim, Y. G., “A Normativ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ith Special Reference

on the Settlement Cases of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of GATT Article 20”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3, No. 2, 2015.

Tamiotti, Ludivine, “The Legal Interface between Carbon Border Measures and Trade Rules” , CLIMATE POL’ Y, vol 11, 2011.

Yu, Peter K.,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and Global Climate Change, in RESEARCH HANDBOOK ON INTELLECTUAL PROP. AND CLIMATE CHANGE」, J. D. Sarnoff ed., 2016.

Wei, Su, “Enhanced Actions On Climate Change: China’ 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2015.



신기후체제의 무역규제와 국제무역협정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Korean Abstract)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 무역질서를 통해 세계시장에 수출함으로써 국내생산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산업화에 기반한 무역체제의 발전은 인류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2015년 12월 유엔기후회의에서 파리협정으로 채택되었고 2016년 11월 4일 국제법으로서 정식효력이 발생했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맺은 협약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체제이다. 새로운 기후변화대응체제는 기후 위기의 완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자원, 기술, 역량 구축 지원 등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자발적인 기여 정도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목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파리협정이라는 새로운 기후변화대응체제에 대한 기존 확립된 WTO라는 무역체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신기후체제와 무역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두 체제 간의 쟁점사항과 상호작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무역협정(RTAs)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기후체제의 정책 조치와 WTO의 무역체제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평가하고, 국제 무역체제가 새로운 기후변화대응체제에 어떠한 지원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두 체제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앞으로 무역규칙과 협상이 기후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WTO 협정 개정은 정치적 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GATT의 제20조(b), (g)와 두문(Chapeau)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진전시킴으로써 WTO가 회원국의 기후정책을 수용하는데 열려있다는 중요한 정치적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WTO에 따른 분쟁 조정시스템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이 시스템을 최대한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RTAs의 협상은 기후와 무역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시험하기 위한 유망한 방법으로 기후 보호 규칙을 더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넷째, WTO 협정으로 통합된 다자간 무역협정은 무역 및 기후정책에 대한 진보적인 WTO 회원국의 무역을 통한 기후 보호 촉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WTO와 UNFCCC의 기구는 제도적 투명성과 책임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은 법적, 정치적 차원에 초점을 맞춰 기후체제와 WTO의 무역체제 간의 상호작용과 두 체제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환경 규제와 무역 자유화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래의 WTO 협정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국제무역 시스템 내에서 유효한 환경 규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주제어] 파리협정, 유엔기후변화협약, 세계무역기구, 국가결정기여

A Study on the Linkage between Trade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New Climate System

Tack-Gyun Choi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ur country, which lacks rich resources and has a narrow domestic market,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increase in domestic production and the creation of jobs by exporting to the world market through the world trade order creat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However, the development of a trade system based on industrialization is calling on humanity to take action on climate change, and this deman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adopted as the Paris Agreement at the United Nations Climate Conference in December 2015 and formally came into force as international law on November 4, 2016.

The Paris Agreement is a new global climate change response

framework that aims to ensure that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does not rise more than 2° C before industrialization as an agreement sign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vent climate change. The new climate change response regime is based on the degree of voluntary contributions of individual countries to mitigating the climate crisis, adapting to climate change, and supporting finance, technology, and capacity building. For these goal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to be successful, it needs the support of the established WTO trade system for a new climate change response regime called the Paris Agreement. To this end, it provided an overall analysis of the newly created new climate and trading regimes and examined the issues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systems.

In addition to the specific changes see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we analyzed and evaluate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new climate system's policy measures and the WTO's trade system, and explored how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could support and contribute to the new climate change response regime.

This study seeks to suggest several ways in which trade rules and negotiations can help protect climate. First, the revision of the WTO agreement, despite the lack of political support, advances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s 20(b), (g) and Chapeau of the GATT, so that it can provide an important political signal that the WTO is open to embracing the climate policies of its member states. Second,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under the WTO can further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so it is necessary to make the most effective

and extensive use of this system. Third, the RTAs' negotiations have the potential to spread climate protection rules more widely as a promising way to introduce and test new rules on climate and trade. Fourth,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incorporated into WTO agreements can further strengthen the promotion of climate protection through the trade of progressive WTO member states on trade and climate policy. Fifth, the WTO and UNFCCC's bodies can increase institution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cusing on the legal and political dimensions, this paper explore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limate system and the WTO's trading system and how the two systems are linked. In the future, the conflict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will continue. The best-case scenario is that future WTO agreements will resolve these conflicts and consolidate valid environmental regulations within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Keywords: *Paris Agreement, UNFCCC, WTO, NDC.*